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강성호·정원석·이상우·이소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3
II. 퇴직연금 지배구조 평가 및 변화	6
1. 계약형 지배구조와 한계	6
2.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추진경과	10
3.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다양화와 영향	15
III. 주요국의 기금형 퇴직연금과 시사점	25
1. 미국	25
2. 영국	30
3. 호주	39
4. 일본	49
IV.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영향과 정책방향	60
1.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영향	60
2. 정책방향 및 시사점	61
• 참고문헌	64
• 부록	69

표 차례

〈표 I-1〉 주요 선행연구 정리	4
〈표 II-1〉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한계	9
〈표 II-2〉 계약형 vs. 기금형 차이	12
〈표 II-3〉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추진 경과	13
〈표 II-4〉 2018년 추진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주요내용	14
〈표 II-5〉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현황(2020년)	17
〈표 II-6〉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2019년)	18
〈표 II-7〉 중퇴기금제도 특성과 효과	18
〈표 II-8〉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 및 근로자 수	20
〈표 II-9〉 적립금운용위원회제도 특성과 효과	21
〈표 II-10〉 과학기술인공제회 특징	22
〈표 II-11〉 과학기술인공제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2021년)	23
〈표 II-12〉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및 퇴직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2020년)	24
〈표 III-1〉 미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유형	26
〈표 III-2〉 미국 퇴직연금 현황(2019년)	28
〈표 III-3〉 퇴직연금 기간별 연평균 수익률	29
〈표 III-4〉 미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30
〈표 III-5〉 영국 퇴직연금의 기금형과 계약형 비교	31
〈표 III-6〉 영국의 퇴직연금 형태별 현황	34
〈표 III-7〉 영국 퇴직연금 제도별 평균 납입자 수 추이	34
〈표 III-8〉 영국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현황(2020년)	35
〈표 III-9〉 영국 DC 기금형 퇴직연금의 자산 및 투자	37
〈표 III-10〉 영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38
〈표 III-11〉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퇴직연금 기금 유형	40
〈표 III-12〉 호주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규모(2020년)	41
〈표 III-13〉 호주 퇴직연금 계좌 보유 수별 가입자 수 및 계좌 수 현황(2020년)	43
〈표 III-14〉 호주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계좌 수 변화 추이	43
〈표 III-15〉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투자수익률 변화 추이	45

〈표 III-16〉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 규모별 투자수익률 변화 추이	46
〈표 III-17〉 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수수료 수준(2020년 기준)	48
〈표 III-18〉 호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49
〈표 III-19〉 일본 기업의 퇴직연금 유형별 도입 비중(2020년, 복수 가입 기업 포함)	53
〈표 III-20〉 일본 퇴직연금 기금형/규약형 제도 수 추이	53
〈표 III-21〉 일본 퇴직연금 유형별 자산규모 추이	54
〈표 III-22〉 일본 금융권별 DB형 시장점유율 추이	55
〈표 III-23〉 일본 DBP 기금형과 규약형의 자산 구성비	55
〈표 III-24〉 일본 DBP 기금형/규약형의 자산운용 수익률 추이	56
〈표 III-25〉 2020년 일본 DBP 기금형/규약형의 투자유형별 자산운용 수익률	56
〈표 III-26〉 일본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59
〈표 IV-1〉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63

그림 차례

〈그림 II-1〉 우리나라 계약형 퇴직연금의 운영체계	7
〈그림 II-2〉 계약형 및 기금형 지배구조의 개요	10
〈그림 II-3〉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체계	16
〈그림 III-1〉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25
〈그림 III-2〉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개수 변화 추이	42
〈그림 III-3〉 호주 ATO의 감독을 받는 자기관리기금의 개수 변화 추이	42
〈그림 III-4〉 호주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적립금 변화 추이	44
〈그림 III-5〉 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자산배분 비중(2021년)	47
〈그림 III-6〉 일본 퇴직연금 기금형/규약형 지배구조	51
〈그림 III-7〉 일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 추이	52

A Research of retirement pension governance and policy implication

To increase the return of the retirement pension fund, some researchers claimed to introduce the trust-based pension scheme. However, introducing the trust-based pension scheme has been delayed because of the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and the market players' conflicts. This report analyzes the properties of the trust-based scheme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cases that implement the trust-based pension scheme. Retirement pensions in those countries are primarily fund-based, and in preparation for high-risk from active investment in high-yield products, strengthen and clarify the trustee's responsibilities. They diversify the pension governance structures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ension trusts so that the total return could increase. Korea introduced the small business trust pension fund for small business workers and the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for the large-sized DB pension funds. We expect that introducing the small business trust pension will strengthen the market power of KWCW(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ince the retirement pension fund market is a captive market, the effects of the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would be limited in the short term. We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Korean retirement pension and insurance companies. First, we ne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mong the financial companies to increase the return of the funds. Second, we must strengthen the participants' rights and clarify the pension providers' responsibilities. Based on those directions, insurance companies need to prepare detailed strategies for the trust-based pension scheme.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금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자본 시장의 미성숙,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의 이해관계 등으로 보편적 의미의 기금형 도입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구조가 보완되어 사업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는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의 사업자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따른 고위험 리스크에 대비하여 수급권보호를 강화하고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도 수탁법인이 될 수 있는 등 지배구조를 다양화하고, 기금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기금형 중심의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AIJ 사건 이후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금형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변경 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퇴기금 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시장 지배력의 증가가 예상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의무화는 대기업의 사업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DB형은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적고 DC형은 집합투자운용 허용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시장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험산업은 적극적 투자전략 모색, 경쟁사와 상생연계전략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198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은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재구축하여 왔으며, 이는 공적연금의 완화와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로 나타났다(OECD 2010).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도 관련된다. 퇴직연금은 도입된 지 16년만인 2021년 말 적립금이 296조 원에 이르고, 전체 상용근로자의 52.4%인 620만 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등 상당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직금¹⁾ 적용자가 절반에 가깝고, 투자수익률은 낮으며, 수령 시 연금화가 미흡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는 등 질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퇴직연금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들은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²⁾에 기인한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즉, 현행 계약형 구조에서는 근로자가 제도운영 과정에 배제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수급권보호와 수탁자책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감시감독 기능도 취약하다는 다양한 지적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지배구조는 주인인 근로자 보다 대리인인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주인-대리인 문제(이하, “대리인문제”라 함)를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투자편향으로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의 일환으로 2014년 사적연금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기금형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³⁾ 즉, 근로자 참여 확대 및 합리적·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제도를 계약형 또는 기금형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회 회기 내 미처리로 자동 폐기되었다.

1) 퇴직급여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대상자로 구분됨

2)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크게 계약형, 기금형(회사형 포함)으로 구분되며,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모두 기금형이나, 퇴직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만 기금형이 가능함

3) 기재부·고용부·금융위(2014)

이후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이라 함) 제도, 적립금운영위원회 도입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⁴⁾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미리 설정해 둔 운용상품에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퇴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중퇴기금 운영을 신청하고, 이들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구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적립금운영위원회’는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으며, 상시 300인 이상 기업에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⁵⁾ 적립금운용계획서⁶⁾(Investment Policy Statement; IPS)를 작성하여 운용하는 준(準)기금형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존의 계약형 제도와 상호경쟁 및 보완을 통해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 형태의 기금형(이하, “보편적 기금형”이라 함)을 선택할 여지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막혀 있다는 점에서 기금형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기금형 도입에 따른 다양한 제도적 이슈와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그동안 퇴직연금 지배구조 논의는 기금형 도입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기금형 도입에 있어 긍정론, 신중론(부정론), 기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다(이태호 외 2015; 김병덕 2017; 남재우 2018;

4)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선택한 방법으로 운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용자 혹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주도로 자산운용을 하는 디폴트옵션제도와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우리나라가 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의 한 유형으로 보고 동일 의미로 사용함

5)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목표수익률의 설정·자산배분정책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계획서, 재정 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함(고용노동부(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6) IPS에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를 포함함

송홍선 2019a, 2019b 등). 동 연구의 대부분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주장에 의하면, 계약형 지배구조는 가입자(수요 측면)들로 하여금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하는 행동주의 편향(Behavioral bias)을 갖게 하고, 수탁자(금융회사, 공급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따라 투자하는 구조여서 적극적 자산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기금형의 경우 수탁법인(운용위원회)에 운용전문 인력이 참여하므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적극적 자산운용이 가능하여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금형 도입에 신중론 혹은 부정론인 연구들이다(손성동 외 2017; 이봉주 외 2018; 정창률 2018). 현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가 지배구조보다 금융환경 등 다른 요인(혹은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이들 주장에 의하면, 투자수익률은 지배구조보다 자본시장 발전 정도, 투자 인식 등 금융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금형은 계약형에 비해 고비용구조이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복잡하므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는 대리인문제와 관련되며, 대표적으로 2012년 AJJ사건, 1991년 Maxwell 사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일본의 AJJ 사건은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어 기금형 도입의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표 I-1〉 주요 선행연구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선행연구
기금형 도입 긍정론	• 계약형 구조의 특징인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 전문성 취약 등이 낮은 수익률의 원인임 • 수탁법인의 전문성으로 운용수익 제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 개선이 가능함 • 부작용에 대응하여 수급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경우 외 2008; 김지희 2013; 이태호 외 2015; 김병덕 2017; 남재우 2018; 송홍선 2019a, 2019b 등
기금형 도입 신중론(혹은 부정론)	• 수익률 등 현행 퇴직연금의 문제는 지배구조 보다 금융환경 등에 있음 • 고비용 구조임(계약형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복잡하므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 • 기금형 도입을 위해 높은 금융윤리가 요구됨	손성동 외 2017; 이봉주 외 2018; 정창률 2018 등
기타	• 기금형과 계약형의 장단점을 비교 •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주요국 기금형 사례연구 등	류건식 외 2016; 류건식 외 2013; 이상우 2018; OECD 2009a, 2009b 등

자료: 저자가 직접 정리함

셋째, 한국의 도입 여부를 떠나 기금형과 계약형의 장단점 비교와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연구들이다(류건식 외 2016; 류건식 외 2013; 이상우 2018; OECD 2009a, 2009b). 동 연구들은 기금형 도입을 논하기보다 지배구조의 공통적 문제, 계약형 및 기금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주요국의 지배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두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첫째, 2022년에 시행되고 있는 중퇴기금, 적립금운영위원회 제도 도입이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를 평가하고 기금형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계약형과 비교를 통해 기금형 특성을 살펴보고, 그 동안 기금형 도입을 위해 추진된 과정, 그리고 2022년부터 도입된 중퇴기금, 적립금운영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연금심의위원회⁷⁾ 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기금형을 도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지배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한다. 제4장에서는 기금형 도입에 따른 영향,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정리한다.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를 참조함

Ⅱ

퇴직연금 지배구조 평가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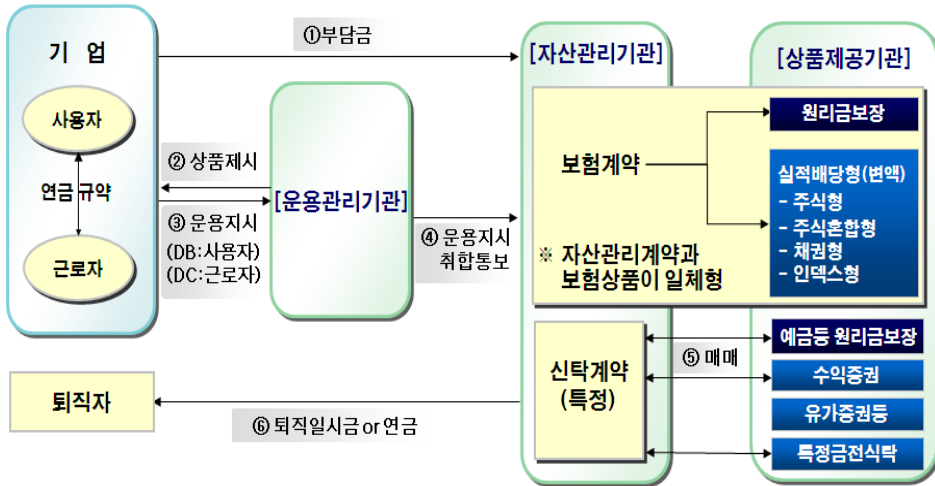
1. 계약형 지배구조와 한계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계약형 단일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중퇴기금제도, 적립금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형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배구조인 계약형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계약형으로 도입된 이유로는 사용자 입장에서 관리하기 편리한 구조이고(이태호 외 2015), 2005년 도입 당시 퇴직금에 대해 사외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형 지배구조는 제도 도입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였고, 계약형 지배구조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남재우 2018; 송홍선 2019a, 2019b; 김병덕 2019; 성주호 외 2019; 이소라 2020)

우리나라의 계약형 지배구조의 운영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하고, 가입자(혹은 DB형은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시된 투자상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한다. 운용지시를 받은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게 가입자나 사용자의 운용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자산관리기관은 보험계약 혹은 신탁계약을 통해 상품제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구입하게 된다.⁸⁾

8) 운용관리기관은 ① 운용방법 및 방법별 정보제공(사전지정운용 업무는 DC형에만 해당), ② 제도설계 및 회계처리(DB형에만 해당), ③ 적립금의 기록·보관·통지, ④ 운용방법의 전달 등을 수행하고, 자산관리기관은 ① 계좌 설정 및 관리, ② 부담금의 수령, ③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④ 운용지시의 이행, ⑤ 급여 지급 등을 수행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제29조)

〈그림 II-1〉 우리나라 계약형 퇴직연금의 운영체계



자료: 고용노동부(2016)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사용자(기업)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노사 간 합의를 근거로 연금규약⁹⁾이 설정되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이하, “사업자”라 함)를 선정하고 사업자들에게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을 일괄 위탁한다. 즉, 계약형은 제도 유형의 설정(DB형 혹은 DC형), 사업자 선정, 적립금 운용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선택과 책임이 근로자(가입자)에게 귀속되는 DC형에서까지 사용자의 지배적 영향을 받게 되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둘째, 가입자, 사용자보다 사업자의 이해에 좌우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입자와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이소라 2020). 또한 업무처리가 간단하고 사용자가 관리하기 용이하다고 여겨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를 동일 사업자가 맡는 번들형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번들형의 경우 두 기관 간 견제와 감시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수탁자책임을 망각하고 수탁자(금융회사)의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대리인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류건식 외 2013; 송홍선 2019a). 이와

9) 노사합의로 설계한 퇴직연금 규약으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급여수준, 급여종류, 수급자격, 가입기간 등이 포함됨

관련하여 수탁자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 투자한 과거 사례가 대표적 대리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¹⁰⁾ 이는 계약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번들형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태호 외 2015, p. 16). 또한 현행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사업자와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이 구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탁자인 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구조로 전략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김병덕 2017; 송홍선 2019a; 이소라 2020). 이에 의하면 수탁자는 가입자에게 적극적인 투자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유관기관의 원리금보장상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수익창출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퇴직연금의 수급권보호 기능이 취약하다. DB형 최소 사외적립비율은 2012년 6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00%¹¹⁾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이 이러한 의무적립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은 퇴직금 사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산할 경우 수급권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한편, DC형 및 IRP에 투자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은 각 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 원(원금과 이자 포함)에 한하여 예금자보호제도¹²⁾가 적용된다.¹³⁾ 그런데, 퇴직연금은 장기보장상품, 즉 생애자산이라는 점에서 일반 예·적금에서 보장하는 수준인 5,000만 원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감시·감독 제도로 인해 감독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들형 구조로 인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간 감시·견제 기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정책 당국의 외부감시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사업자와 사용자의 책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제32조,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성과 강제성이 부족해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류건식 외 2013).

다섯째, 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평가도 미비하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수탁자로서 가입자를 위한 질적인 서비스나 관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희망 사업자를 대상¹⁴⁾으로 평가함에 따라 실

10)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5. 7. 1일부터 전면 금지됨. 2011. 10월 70% → 2013. 4월 50% → 2015. 1월 30% → 2015. 7. 1일 전면 금지됨(금융위원회(2015. 7. 8),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고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을 제정하여 연금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11) ('12~'13) 60% → ('14~'15) 70% → ('16~'17) 80% → ('18~)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80% 이상 → ('19~'20) 90% → ('21~) 10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12) 예금자보호의 근거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에 따른

13) 예금자보호법 제32조 ②항,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항과 관련됨

효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¹⁵⁾

특히, 수급권보호 기능 취약, 느슨한 감시·감독 등은 계약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운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한계

구분	내용
사용자의 영향이 지배적임 (근로자 참여 취약)	- 계약형(Contract-type) 지배구조는 노사 간 계약을 근거로 기본제도가 설정되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금융회사(사업자)를 선정하고, 대부분 업무가 사업자에 일괄 위탁되는 등 사업자(기업)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음 - 특히, 퇴직연금 제도 설정, 사업자 선정,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서 주로 사용자가 영향력을 행사함
사업자에 의존 (변들형 문제, 자율감시 부재)	- 자산관리와 운용관리를 동일 사업자가 맡는 변들형으로 운영되어, 두 기관 간 견제와 감시기능이 상실됨¹⁾(대리인문제) - 관련 부작용으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 투자된 바 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자사상품 편입 축소하여 2015년 7월 이후 전면 금지함 - 연금사업자 시장의 과점화로 가입자 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
수급권보호 장치 미흡	- DB형의 경우 최소 사외적립비율 충족하지 못하고 도산 시 퇴직금사업장처럼 수급권보호가 어려움 - DC형의 경우 생애자산이라는 점에서 5천만 원 보장은 과소함
느슨한 감시·감독 규율 (감독기능 취약)	- 운용관리기관이 감시·견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감시는 사업자에 대한 정책 당국의 감시가 거의 유일함 - 그러나, 사업자와 사용자의 책임은 근퇴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성과 강제성이 부족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평가 미비	- 사업자가 가입자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가입자를 위한 질적인 서비스나 관리에 노력이 부족함(사후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 최근 사업자 평가는 임의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2022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사후평가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주: 1) 이는 계약형의 문제라기보다 변들형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임. 변들형은 업무처리 원활하고 사용자의 관리 용이로 보편화되었으나, 이로 인한 견제·감시기능은 취약해짐(이태호 외 2015)

자료: 김지희(2013); 남재우(2018); 송홍선(2019a)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14) 2021년 평가는 영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43개소, '20년 말 기준)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한 33개사(은행 11개사, 보험 15개사, 증권 7개사, 적립금 기준 98.9%)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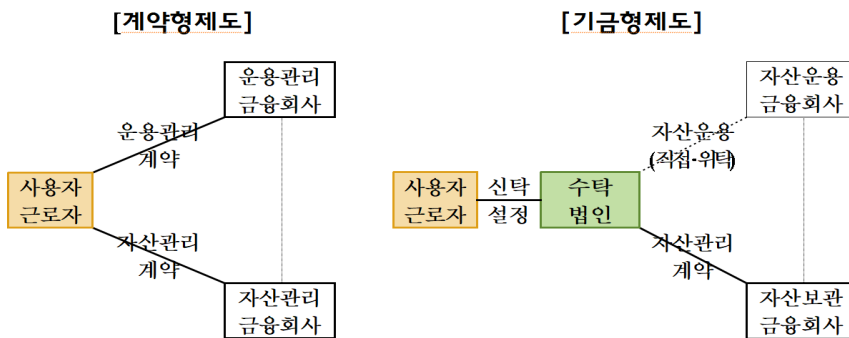
1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11. 10), “노사가 퇴직연금을 든든히 믿고 맡길 수 있는 “2021년 상위 10%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발표”

2.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추진경과

가. 기금형¹⁶⁾과 계약형 비교

기금형이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금을 설치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자산운용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기금형은 계약형과 달리 수탁법인(대리인, 기금)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함)를 반드시 두며, 동 위원회가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을 직접 혹은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중소기업들은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여(연합형¹⁷⁾ 제도)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을 중심으로 기금형이 도입되었으나, 2022년부터 중소기업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금형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계약형 체계 내에서도 적립금운용위원회(300인 이상 DB사업장), 연금심의위원회(과학기술인공제회) 구성을 통해 기금형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다.

〈그림 II-2〉 계약형 및 기금형 지배구조의 개요



자료: 고용노동부(2016)

계약형과 기금형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 <표 II-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탁법인인 운용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냐의 차이이다. 계약형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16) Trust-based retirement pension 혹은 Fund-type, Institutional type으로 표현됨(남재우 2018)

17) Stewart and Yermo(2008)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가입자 규모별 기금의 운영비용을 보면, 100명 미만은 0.59%, 100만 명 이상은 0.07%로 나타나 연합형 운영 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게 됨(정창률 2018)

에게 일괄 위탁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형태이나, 기금형은 운용위원회를 통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자산관리업무는 직접 혹은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둘째,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의 위탁 형태의 차이이다. 계약형은 운용과 자산관리 계약 모두를 외부 금융회사에 위탁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감독한다. 기금형의 경우 운용관리 업무는 수탁법인이 수행하고(위탁도 가능), 자산관리 업무¹⁸⁾는 위탁하는 구조이다. 자산운용지침서인 투자원칙보고서(IPS)¹⁹⁾를 작성하여 운영하며,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2022년 4월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DB형 계약형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셋째, 관리·운용 주체 및 투자 의사결정의 차이이다. 관리·운용 주체의 경우 계약형은 사업자(금융회사)가,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된다. 투자의사결정의 경우 계약형은 가입자인 근로자(DC형) 혹은 사용자(DB형)가 되고, 기금형은 DC형에서는 계약형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인 근로자가 되나 DB형은 사용자가 아니라 수탁법인이 된다. 물론 DC형이 집합투자로 운용될 경우(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CDC) 근로자를 대신하여 수탁법인이 투자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집합투자운용(CDC)은 국민연금기금처럼 공동으로 형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예, 국민연금공단)이 일괄적으로 투자운용하는 것으로 개별투자운용(Individual Defined Contribution; IDC)과 달리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므로 운용위험이 특정 가입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감독대상을 살펴보면 계약형의 경우 사업자가, 기금형의 경우 수탁법인이 그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 발전의 기여 측면에서 기금형이 높이 평가되나,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계약형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계약형과 기금형의 가장 큰 특징적 차이는 운용위원회 여부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형에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처럼 기금형의 특성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측면에서는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금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형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두 지배구조는 공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법적으로 계약형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퇴직연금 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성은 있다.

18) 자산관리업무를 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할 경우 과거와 같이 금융비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위탁 함

19) 기업 또는 개인의 목표와 상황 등을 고려한 투자목표와 자산배분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투자 가이드라인(Investment Policy Statement; IPS)임

〈표 II-2〉 계약형 vs. 기금형 차이

구분	계약형	기금형
특징	• 금융회사에 퇴직연금기금을 위탁하여 운용	• 회사에서 수탁법인(운용위원회)을 설립하여 신탁형태로 운용(정책결정은 노사가, 기금운용은 수탁법인이 함) • 의사결정 구조 복잡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고비용(이사회 및 외부감사 설립 등)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 운용과 자산관리 계약 모드를 외부 금융회사에 위탁 •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 자산보관 업무는 위탁 • 운용관리 업무는 수탁법인이 수행(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 • 투자원칙보고서(IPS) 작성
관리·운용 주체	사업자(금융회사)	수탁법인(기금운용위원회, 비영리법인)
투자 의사결정	• DB: 사용자 • DC: 근로자	• DB: 수탁법인(이사회 지침에 따라) • DC: 근로자(수탁법인이 도움)
감독대상	사업자	개별기금
자본시장 발전 기여	낮음	높음
기업비용 부담	낮음	높음
대상국가	• 한국, 일본(혼합형)	• 기금형: 미국, 영국, 호주, 일본(혼합형) 등 • 회사형²⁾: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주: 1) 독일도 계약형이 존재함(남재우 2018)

2) 산업군별로 연기금(독립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임

자료: 류건식 외(2013); 남재우(2018)를 참고하여 정리함

나. 기금형 도입 추진경과

현행 계약형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근로자 참여 취약, 대리인 문제, 수급권보호 문제, 감독 기능 취약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기에 선진국들의 퇴직연금의 주요 지배구조가 기금형이라는 점, 그리고 자본시장의 성숙으로 다양한 지배구조의 선택을 통해 근로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금형 도입 논쟁은 퇴직연금 개편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에 2015년 정부는 근로자 참여 확대 및 합리적·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기금형 도입을 계획한 바 있다.²⁰⁾ 이에 의하면, 2018년 국무회의의 통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제도를 계약형 또는 기금형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표 II-3〉 참조).

〈표 II-3〉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추진 경과

일정	내용
'14년 8월	정부합동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기금형 도입)
'14. 8월~'16. 7월	기금형 도입 방안검토(연구용역,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
'16. 8월~10월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16. 9월~'17. 6월	규제심사
'17. 6월~'18. 3월	법제심사
'18. 4. 10	국무회의 통과(이후 회기 내 미처리로 자동 폐기됨)

자료: 고용노동부(2018)

2015년에 계획되고 2018년 4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논의과정과 시간이 소요되었다(〈표 II-4〉 참조). 정부의 기금형 도입의 주요 목적은 노사의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 등을 개선하는 데 있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영함으로써 노사의 참여 확대와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형 도입은 기존 계약형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들 간의 이해 충돌을 가져올 여지가 있었고, 또한 기금형의 장점만큼 부작용도 우려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에 국무회의를 거친 기금형 도입 안은 거의 시행되는 상황까지 갔으나, 국회에서 계류된 상황에서 처리지연으로 자동 폐기 된 상황에 이르렀다.

20) 기재부·고용부·금융위(2014)

〈표 II-4〉 2018년 추진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도 도입 의사결정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노사합의) 계약형과 기금형 중 하나를 선택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수탁법인 설립	•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자산운용 등 업무 범위에 따라 설립허가 요건 차등 적용)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연합해 하나의 수탁법인에 연금자산을 신탁하는 연합형 기금형 허용 → 기금 대형화 통한 비용절감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및 노사 추천자로 구성, 연금제도 운영의 주요사항 결정 * 노사추천자는 같은 수로 구성, 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해 전문적 기금운영 기반 마련
수탁법인에 기금의 신탁	• 사용자와 수탁법인 간 계약으로 신탁 설정 -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고, 수탁법인은 수익자(근로자)를 위해 신탁(연금) 자산을 관리·운용할 의무 부담 • 사업장, 수탁법인 도산 시에도 적립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
수탁법인의 연금제도 운영	• 노·사로부터 연금자산운용 및 급여지급 등 퇴직연금 운영 업무 수탁 • 수탁법인은 연금자산을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용 가능 -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는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지침 및 전략(적립금 운용계획서)에 따라 운용 • 다만, 횡령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자산의 직접 취급금지(금융회사에 위탁 강제)
수탁법인 책임 및 관리감독	• 수탁법인: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관리감독 체계 - 고용노동부: 기금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 사업자(금융회사)는 금융위·금감원에서 관리·감독 수행 - 내부감사: 수탁법인의 적립금 운용의 건전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 후, 결과를 노·사 및 노동부에 보고 - 외부감사인(회계감사인, 독립계리업자 등): 적립금 운용의 건전성,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감사 및 검증

자료: 고용노동부(2018)

추진된 기금형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현행 계약형과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독립된 수탁법인(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징적 내용으로 계약형과 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는 점,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이어야 한다는 점, 통합기금형(Master Trust)을 허용한 점, 노사 동수의 이사회를 구성토록 한 점,

신탁 설정의 주체는 사용자와 수탁법인 간의 계약으로 한 점, 연금자산운용을 수탁법인이 직접 혹은 위탁할 수 있다는 점, 자산관리 업무는 반드시 금융회사에 위탁하게 한 점 등이다. 세부내용은 <표 II-4>를 참고하기 바란다.

3.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다양화와 영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금형 도입은 되지 않았지만, 계약형 지배구조에 대한 보완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2022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이라 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300인 이상 DB사업장에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현 퇴직연금사업자의 하나인 과학기술인공제회²¹⁾에서도 이미 연금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계약형 외 다양한 지배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퇴기금제도)

중퇴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²²⁾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소기업 사용자는 제도 도입을 기피하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조차도 사업자의 소극적 영업으로 많은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정체된 상황에 있었다. 이에 근퇴법 개정(20. 4. 13)을 통해 30인 이하 사업장에 DC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제도’가 도입되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²³⁾

중퇴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퇴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금의 구성형태를 보면, 노·사·정·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를 둔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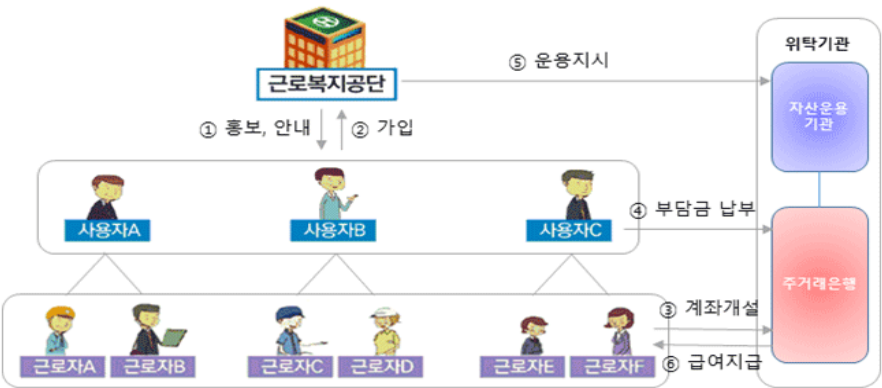
2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제4항

22) 고용노동부(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3) 우리나라 중퇴기금은 혼합형 퇴직연금 중에서 DC형에 기반한 스위스 퇴직연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송홍선 2022)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 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수수료율 0.2% 이하)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월평균 보수 230만 원(최저임금 120%) 미만의 소득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부담금 10%(연간 최대 23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퇴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림 II-3〉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중퇴기금 운영을 신청함으로써 연합형 형태로 운영되고 기금운용은 집합운용(CDC형) 형태가 된다.

이러한 중퇴기금의 특징은 기금형 지배구조로 DC형으로 집합운용(CDC형)을 한다는 점이다.

〈표 II-5〉를 활용하여 근로자 및 가입자를 기준으로 향후 중퇴기금 가입자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는 476만 명이 될 수 있으나 이들 중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²⁵⁾는 대상자의 37.8%인 179.9만 명이다. 그런데 중퇴기금 가입 대상은 DC형 가입자만 해당되므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77.6%인 139.7만 명

24) 중퇴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공되는 통계 자료의 한계로 여기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퇴기금제도 대상자로 설정함

25) 여기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아니거나 IRP 가입자로 포함하므로 의무가입 사업장의 가입자(2020년 1,581천 명) 수 보다 많음

이 된다. 그러나 이는 DC형 가입자가 모두 중퇴기금 가입자가 되는 최대 수치인데, 이들 모두가 근로복지공단의 중퇴기금을 선택할 것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즉, 현재 30인 미만 DC 사업장 가입자(전체 139.7만 명)를 근로복지공단과 금융업권 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입자로 구분하면 각각 41만 명(30.6%), 93만 명(69.4%)으로 추산된다.²⁶⁾ 이는 현행 계약형 체계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모두가 근로복지공단을 사업자로 선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퇴기금이 적용되더라도 이들 모두가 중퇴기금을 선택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중퇴기금이 적용될 경우 중퇴기금으로 전환되는 규모는 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계약형 가입자인 41만 명 중 일부에서, 그리고 금융업권 사업자의 계약형 가입자 93만 명 중 일부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5〉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현황(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A)	퇴직연금 가입자(B)	비율
30인 미만 전체	4,760	1,799(37.8)	100.0
DC형	-	1,397	77.6
DB형	-	402	22.4

주: () 안은 가입 대상 근로자(A) 대비 전체 가입 근로자 (B)의 비율인 퇴직연금 가입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12. 23),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함

그런데, 이러한 예상은 현행 퇴직연금 중 DC형 가입자 수만 고려한 것인데, 향후 중퇴기금 적용으로 퇴직금 적용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중퇴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퇴직금 적용 근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II-6〉에서 보듯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에서 94.2%²⁷⁾를 차지하고 근로자 수는 전체 대상 근로자 중 40.1%인 476만 명이다. 여기서 전체 대상 근로자를 퇴직연금과 퇴직금 가입자로 구분하여 보면 각각 179.9만 명, 296.1만 명(62.2%)으로 산출된다. 이는 퇴직금 적용자가 30인 이하 사업장의 대부분이므로 중퇴기금 적용의 확대 여부는 퇴직금 사업장을 퇴직연금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면 중퇴기금 시장은 현재에 비해 1.4배²⁸⁾ 더 증가할 수 있는 규모이다.

26) 노동복지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경영공시/복지연금 통계/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현황을 참조함
 27) 퇴직연금 도입률(2020년)은 전체 27.2%,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이며, 가입률(2020년)은 전체 52.4%, 30인 미만 33.2%, 30~299인 61.3%, 300인 이상 69.18%임(통계청 2021)

〈표 II-6〉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2019년)

(단위: 천 개소, 천 명, %)

구분	사업장 수	비율	근로자 수	비율
계	1,464	100.0	11,865	100.0
30인 미만	1,379	94.2	4,760	40.1
(퇴직연금)	-	-	1,799(37.8)	-
(퇴직금)	-	-	2,961(62.2)	-
30~300인 미만	80	5.4	3,513	29.6
300인 이상	5.1	0.4	3,593	30.3

주: 1) () 안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 전체 대비 퇴직연금, 퇴직금 적용 비율임

2) 사업장과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용대상 사업장과 근로자임(퇴직금 사업장, 근로자 포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12. 23),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함

정리하면 기존 DC형 사업장의 경우 원한다면 최대 139.7만 명이 중퇴기금 적용자로 전환 될 수 있고(전환자), 신규로 퇴직금 사업장이 DC형 사업장으로 전환하여 중퇴기금제도에 참여한다면 최대 296.1만 명이 추가로 중퇴기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자 및 신규자를 합산한 435.8만 명이 중퇴기금의 최대 적용대상자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자, 근로자 간의 합의, 시장 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표 II-7〉 중퇴기금제도 특성과 효과

구분	내용
제도 특성	•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납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22. 4. 14일 시행) • 구성: 기금제도운영위원회(10~15명)와 4개 하위 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 지원: 3년간 사용자부담금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 원), 최저 수수료(수수료를 0.2% 이하) • 운용형태: 기금형, 집합운용(CDC형)
도입 효과	• 최대 적용 가능자 수: 기존 최대 139.7만 명 + 신규 최대 296.1만 명(2022년 기준)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자, 근로자 간의 합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

28) 퇴직금 적용 근로자 수(296.1만 명)는 현 DC 적용 사업장 근로자 수(139.7만 명)의 1.4배임

나. 적립금운용위원회²⁹⁾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는 원리금보장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지속적으로 낮으면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으며, 도입 취지와 운영형태 측면에서 보면 동 제도는 준(準)기금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2022년 4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³⁰⁾ 적립금 운용계획서³¹⁾(Investment Policy Statement: IPS)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7명 이내로 구성된다.³²⁾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사업장은 ① 근로자대표 ②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각 1명 이상을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 특성을 보면, DB형의 특성상 근로자의 퇴사 전까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관리 권한을 부여하지만, 사외 적립금이 부족하면 퇴직급여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DB형에 근로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적립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형 구조 내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업자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행 퇴직연금 지배구조가 사업자와 계열사 간 내부시장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동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사업자 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시행으로 적극적 투자운용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OCIO³³⁾(외부위탁운용: 투자일임) 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적용받게 될 사업장과 가입자 규모를 살펴보면 <표 II-8>과 같다. 적

29) 퇴직급여법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를 참조함

30)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목표수익률의 설정·자산배분정책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함(고용노동부 2022. 4. 25)

31) IPS에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를 포함함

32) 최소적립금 미충족 시 근로자대표를 의무 선임해야 함

33) 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제도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자산운용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운용 체계를 의미함(남재우 2020)

립금융위원회 도입은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므로 2020년 기준 적용 사업장 수는 1,171개이고, 근로자 수는 182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22.8%(퇴직연금 사업장의 25.1%), 300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50.7%(퇴직연금 사업장 근로자의 71.4%)에 해당된다.

〈표 II-8〉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 및 근로자 수

(단위: 천 개소, 천 명, %)

구분	사업장 수(AA)	전체 도입 사업장(A)	확정 급여형(B)	B/A (B/AA)	근로자 수(aa)	전체 가입 근로자(a)	확정 급여형(b)	b/a (b/aa)
전체	1,464	408	95	23.2	11,865	6,648	3,133	47.1
30인 미만	1,379	341	75	21.9	4,760	1,799	402	22.4
30~300인 미만	80	63	19	30.4	3,513	2,298	909	39.6
300인 이상	5.1	4.670	1.171	25.1 (22.8)	3,593	2,551	1,821	71.4 (50.7)

주: 1) 도입사업장, 가입근로자는 도입 및 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예, IRP 가입자)도 포함됨

2) ()은 각각 사업장 수(AA), 근로자 수(aa)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2021. 12. 23),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한편, 적립금융위원회 제도의 시행으로 운영비용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아 순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2022. 4. 25)³⁴⁾는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운영비용(외부전문가 수당 등 운영비용)은 2억 291만 원, 수익률 제고로 4,227억 7,498만 원의 편익이 발생하여 순비용은 △4,225억 7,207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34) 분석연도 및 시행연도를 2022년, 할인율은 4.5%, 대상기간은 3년으로 하여 현재가치로 추정함

〈표 II-9〉 적립금운용위원회제도 특성과 효과

구분	내용
제도 특성	- 임금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익률로 인해 DB형 퇴직연금 연금부채 증가 우려 방지 위해 설립('22. 4월 14일 시행) - 구성: 위원장 포함 5~7명 - 운용형태: 준(準)기금형(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를 포함) 2020년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은 1,171개(근로자 182만 명) -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고용노동부 2022. 4. 25): 순비용△4,225억 7,207만 원 감소(운영비용(외부전문가 수당 등 운영비용): 2억 291만 원, 편익(수익률 제고): 4,227억 7,498만 원)
효과	- 대상 사업장 수 1,171개, 대상 근로자 수 182만 명(2022년 기준) - 사업자와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 사업자 시장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편익 발생으로 순비용은 △4,225억 7,207만 원 감소 - 운영비용 2억 291만 원, 편익 4,227억 7,498만 원

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심의위원회³⁵⁾

비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외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운영 등) 제4항에 근거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 위원회를 설립하고 자산운용본부 및 리스크 관리센터, 연금사업실을 운영 중이다.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및 이사회가 있으며, 연금심의위원회·자산운용전략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리스크 관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³⁶⁾

특히, 연금심의위원회³⁷⁾는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기타 심의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위원장 1명,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때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러한 연금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금형의 운용위원회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3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를 참조함

36) 자산운용체계|자산운용|경영정보|공제회 소개|과학기술인공제회(sema.or.kr)

3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표 II-10〉 과학기술인공제회 특징

구분	내용
퇴직연금 사업 근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2(퇴직연금급여사업의운영 등)’에서 규정
추진 배경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퇴직연금급여 사업을 실시
가입 대상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으로 한정
제도 유형	확정기여(DC)형
제공 상품 유형	원리금보장형 4종(공제회 1종/우리은행 3종), 실적배당형 94개, 모델포트폴리오(Model Portfolio; MP) 6종 제공(2022년 8월 검색)
수수료	공제회는 사용자부담금 원금에 대해서만 관리비용분담금이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

자료: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연금을 참고하여 작성함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투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원리금보장형 4종(공제회 1종/우리은행 3종), 실적배당형 94개(펀드 67개, TDF 27개), 모델포트폴리오(Model Portfolio; MP³⁸⁾) 6종(모델포트폴리오로 여러 펀드를 편입하는 상품임)에 투자하여 운용되고 있다. 다만 MP상품은 2022년 6월 13일 부터 라인업에서 제외되어 신규투자는 할 수 없다.³⁹⁾

2021년 과학기술인공제의 자산배분과 수익률을 살펴보면, 부동산, 기업, 인프라, 주식투자 등의 순으로 자산배분 비율이 높으며, 수익률은 주식 16.3%, 부동산 9.32% 등 전체 수익률은 7.7%로 나타났다. 2020년, 2019년 전체 수익률은 각각 5.78%, 8.15%로 수익률이 대체로 높았다. 이는 부동산,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와 운용체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임. 여기에는 Active형과 Passive형의 운용 전략이 있는데, Active형은 동일 위험 내에서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며, Passive형은 동일 위험 내에서 적극적인 자산배분보다는 지역 및 자산 종류의 변화를 통해 위험수준을 낮추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임(https://www.dgb.co.kr/cms/dev/prv/prv_isa06.html)

39)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자료실/[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수익률(2022. 7. 29)을 참조함

〈표 II-11〉 과학기술인공제외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2021년)

구분	주식	채권	멀티에셋	부동산	기업	인프라	단기자금	합계
금액(억 원)	12,677	9,959	6,480	22,901	24,814	13,336	1,705	91,874
비율(%)	13.80	10.80	7.10	24.90	27.00	14.50	1.90	100.00
수익률(%)	16.03	3.62	9.15	9.32	7.71	2.44	0.82	7.70

주: 펀드형태로 투자되며, 이를 자산유형별로 재분류한 것임

자료: 과학기술인공제외 홈페이지/자산운용현황/자산운용을 참조함

라.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이미 계약형 외 다양한 지배구조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지배구조가 미칠 영향과 적용 대상자 규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퇴기금제도 적용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DC형 가입자 모두가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2022년 기준으로 기존 DC형 가입자는 최대 139.7만 명, 신규 퇴직금 적용자는 최대 296.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자, 근로자간의 합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중퇴기금을 선택할 것이므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존 중소기업 가입자 중 일부가 계약형에서 중퇴기금으로 전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동안 퇴직연금 제도 운영의 관행상 상당히 보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퇴기금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것이므로 단기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현행 퇴직연금 지배구조가 사업자와 계열사 간 내부시장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도입이 강제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사업자 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으로 적극적 투자운용은 추진될 것이므로 자산운용사의 OCIO 서비스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과학기술인공제외는 연금심의위원회를 둬으로써 다양한 자산배분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획득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고려할 점은 연금심의위원회가 기금형 특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는 현행 계약형 제도 내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는 위

원회 구성과 IPS 작성을 조건으로 한다면 계약형과 기금형의 차이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리하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금형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중퇴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장 규모별, 제도유형 등 가입자 특성별로 구분된 기금형은 이미 도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편적 기금형 도입의 가능성은 중퇴기금과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연금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금형 특성을 갖는 제도들이 향후 어떤 성과를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보편적 기금형 가입 대상자 규모를 추정해 보면 <표 II-12>와 같다. 여기서는 현행 중퇴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보편적 기금형을 적용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먼저 현 퇴직연금 가입자만 보편적 기금형 가입 대상이 될 경우 총 대상자 664.8만 명 중 중퇴기금 가입자 40.8만 명, 적립금운용위원회 182.1만 명을 제외한 441.9만 명이 최대 가입 대상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퇴직금 가입자 521.7만 명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가입 대상으로 편입된다면 최대 963.6만 명(441.9만 명 + 521.7만 명)이 보편적 기금형 가입 대상자로 추산된다.

<표 II-12>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및 퇴직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2020년)

(단위: 천 명)

구분	가입 대상 근로자	(퇴직금 대상자)	퇴직연금 가입자	DB형		DC형	
				소계	적립금 운용위	소계	근로복지 공단
계	11,865	(5,217)	6,648	3,133	-	3,467	-
30인 미만	4,760	(2,961)	1,799	402	-	1,345	408 <30.6>
30~300인 미만	3,513	(1,215)	2,298	909	-	1,393	-
300인 이상	3,593	(1,042)	2,551	1,821	1,821 <100.0>*	730	-

주: < >은 해당 유형에 대한 비율이며, < >*는 의무적용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21. 12. 23),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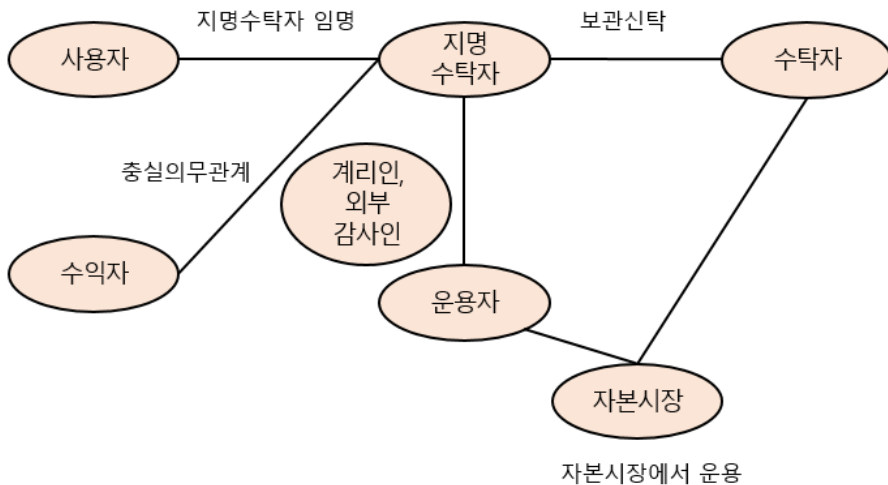
주요국의 기금형 퇴직연금과 시사점

1. 미국

가. 퇴직연금 지배구조

미국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기금형으로 운영되며 지명수탁자(Named fiduciary)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어느 유형에서든 반드시 지명수탁자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ERISA법에 의해 1명 이상의 지명수탁자 임명이 의무화된다. 일반적으로 지명수탁자는 연금자산운용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기능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미국의 기금형 지배구조는 다시 신탁형과 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탁의 설정여부, 운용권한 위임 여부 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류건식 외 2013; 김병덕 2017).

〈그림 Ⅲ-1〉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자료: 류건식 외(2019)

〈표 Ⅲ-1〉 미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유형

유형		주요내용
신탁형	(1유형)신탁설정& 신탁수탁자 운용권 획득	- 신탁수탁자는 자산운용권을 행사하고, 지명수탁자는 자산운용권을 제외한 기타 관리권한을 행사함 - 지명수탁자는 신탁수탁자에 대한 운용감독 역할을 수행
	(2유형)신탁설정& 신탁수탁자 운용권 미획득	- 신탁수탁자는 기금 보관자 역할을 하며, 지명수탁자가 자산운용권 행사와 기타 관리권한 모두를 행사함 - 지명수탁자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충실의무 부과, 신탁 수탁자로 하여금 지명수탁자의 충실 의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음)
	(3유형)신탁설정& 투자운용자 운용권 획득	- 투자운용자는 자산운용을, 신탁수탁자는 기금 보관을, 지명수탁자가 기타 관리권한을 행사함 - 투자운용자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지명수탁자, 신탁수탁자의 투자운용자에 대한 감독원 행사를 하게 할 수 있음)
보험형	(4유형)신탁미설정	- 퇴직연금 자산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으로 구성됨 - 보험회사 선정에 있어 지명수탁자의 충실의무 중요

자료: 류건식 외(2013)를 재정리함

이러한 4가지 유형은 크게 신탁지명수탁자, 신탁수탁자(신탁은행, 신탁회사 등), 투자운용자 중 어느 기관이 자산운용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역할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 〈표 Ⅲ-1〉에서 보듯이 1~3유형은 모두 신탁이 설정되는 경우이다. 이 중 1유형은 신탁 설정과 함께 자산운용권이 지명수탁자에게서 신탁수탁자로 이전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지명수탁자는 자산운용권을 제외한 기타 관리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신탁수탁자의 자산운용권에 대해 지명수탁자는 운용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유형은 신탁은 설정되어 있으나 자산운용권은 지명수탁자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이며, 이때 신탁수탁자는 단순히 기금 보관자 역할만 하게 된다. 따라서, 지명수탁자는 자산운용권을 포함한 모든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구조가 되므로 지명수탁자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3유형은 신탁 설정과정에서 자산운용권을 투자운용자에게 위탁하는 구조이므로 신탁수탁자는 기금 보관자로, 지명수탁자는 자산운용권을 제외한 기타 관리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운용자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1, 2유형에 비해 권한이 분산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4유형은 퇴직연금 자산이 신탁계약이 아닌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계약형과 유사하다. 이때는 보험회사 선정에 있어 지명수탁자의 충실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 지배구조의 특징으로 연금계리사 등과 같은 제3자적 감시기능 장치를 두고 있고, 수

금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시장 운영이 자율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DB형 퇴직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1974년 ERISA법의 제정으로 연방정부 기관으로 연금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PBGC))를 설치한 바 있다. 동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기업 파산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근로복지공단 2015).

또한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자보증보험⁴⁰⁾과 수탁자책임보험⁴¹⁾을 ERISA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퇴직연금⁴²⁾ 현황 및 특성

미국의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Employer)가 설립한 퇴직연금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퇴직연금 관리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감시되고 운영된다. DB형의 경우 기금이 전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되며, DC형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금이 해당 상품의 라인업을 위험도와 수익률을 고려하여 선별한다. 기금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DC형의 금융상품은 뮤추얼펀드, 국공채,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이며, 이 중 엄선된 10~20개 수준의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선정 부담을 줄여준다.⁴³⁾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수는 2019년 약 73.3만 개였다. 이를 퇴직연금 형태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1975년 경에 DB형 103,346개, DC형 207,748개 였으나 2019년에 DB형은 46,870개로 감소하였고, DC형은 686,809개로 증가하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100명 미만 사업장이 64만여 개, 100명 이상 사업장이 9만 4천여 개로 나타났다.

미국의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2019년 기준 약 9,810만 명에

40) 수탁자의 불성실한 행위로부터 연기금과 연금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청구 내용이나 보상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41) 수탁자의 과실, 태만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 구입을 통해 연기금과 연금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 여부는 자율에 맡김

42) 여기서 퇴직연금은 모두 사적 퇴직연금을 의미함

43) Cooke Financial Group

이른다. 퇴직연금 제도 수와 마찬가지로 DC형에 가입된 가입자의 수가 더 많은데, 2019년 기준 DB형 납입 가입자는 1,260만 명인 데 반해 DC형은 8,550만 명이었다. 동년도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수 1억 6천만 명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약 61% 이다.⁴⁴⁾ 사업장 규모별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100명 미만 사업장 가입자는 약 1,033만 명, 100명 이상 사업장 가입자는 약 9,658만 명 수준이었다. 즉 대규모 사업장에서 가입자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퇴직연금 전체 자산 규모는 2019년 기준 10조 달러 이상이며, DB형이 3조 2,744억 달러, DC형은 7조 4,326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DB형 퇴직연금을 전체 퇴직연금에서의 비율로 살펴보면 제도 수 비중으로는 6.3%,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12.8% 수준이며 적립금 기준으로는 30.5%였다. 따라서 DB형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 연간 기여금이 많은 사업장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주식, TDF 등 고수의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미국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는데,⁴⁵⁾ 전체 뮤추얼펀드 중 58%가 주식형 펀드(Equity mutual funds)에 투자되고 있다. 또한 최근 Target Dated Funds(TDF)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DC형에서 0.73조 달러(66.7%), IRA에서 0.21조 달러(19.3%)를 보유하여 DC형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근로복지공단 2019).

〈표 III-2〉 미국 퇴직연금 현황(2019년)

구분	전체	DB형	DC형
퇴직연금 수(개)	733,678	46,870	686,809
100명 미만	639,751	39,586	600,165
100명 이상	93,927	7,284	86,644
가입자 수(천 명)	98,106	12,602	85,504
100명 미만	10,330	340	9,990
100명 이상	96,586	12,262	75,515
적립금(백만 달러)	10,707,139	3,274,486	7,432,653
연간 기여금(백만 달러)	672,845	102,634	570,211
연간 지급액(백만 달러)	856,966	257,885	599,081

자료: Department of Labor(2020, 2021)

44) 통계청/KOSIS/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OECD)

45) 2018년 말 401(k)의 자산배분을 구성을 보면 전체 5.2조 달러의 자산에서 3.3조 달러(약 63%)가 뮤추얼펀드에 투자됨(근로복지공단 2019)

미국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은 2000~2019년까지 약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5.6%, 2017~2019년 약 2년간 수익률은 9.5%였다. DB형보다는 DC형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퇴직연금 기간별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기간	전체	DB형	DC형
2000~2019	5.6	5.9	5.2
2010~2019	8.4	8.3	8.4
2015~2019	7.1	6.7	7.4
2017~2019	9.5	8.9	9.8

자료: Department of Labor(2020)

다. 소결

미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대부분 기금형이며, 지명수탁자가 의무적으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신탁의 설정 여부, 운용권한 위임 여부 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미국의 DB형은 퇴직 후에도 평생노후를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산업구조 변화, 경기 변화 등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DC형으로 전환 중이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권보호(DB형 PBGC 도입)와 수탁자책임(수탁자보증보험, 수탁자책임보험)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퇴직연금은 1억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 개수로는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았으나 가입자 수는 대형 사업장에서 많았다. DB형보다는 DC형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수와 적립금이 더 많아 DC형 퇴직연금이 지배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기금을 만들고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기금이 운영된다. DB형의 경우 기금이 자산운용을 일임받아 운용하나 DC의 경우에는 기금이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따라 운용하되,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선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두 제도의 특징적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수익률에 있어 특별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면, 장기(20년)에서는 DB형이 DC형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10년 이내 평균수익률에서는 DC형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지만 두 제도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Ⅲ-4〉 미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지배구조 특징	• 기금형 지배구조이며 지명수탁자가 주요 역할을 함 • 4가지 지배구조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신탁형 3개, 보험형 1개로 구분됨 • 미국의 DB형은 퇴직 후에도 평생노후를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산업 구조 변화, 경기 변화 등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DC형으로 전환 중임 • 연기금 자산을 주식, TDF 등 고수익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함 • 수급권보호(DB형 PBGC 도입)와 수탁자책임 강조(수탁자보증보험, 수탁자책임 보험을 법에 규정)
퇴직연금 제도/기금 수	• 제도/기금 수(2019): 전체 73만 개, DB형 4.7만 개, DC형 69만 개(93.6%)
가입자 수/가입률	• 가입자 수(2019): 전체 1억 4천만 명, DB형 3천 3백만 명, DC형 1억 1천만 명 (76.9%) • 경제활동인구 수(2019): 1억 6천만 명 •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률(2019): 87.5%(1.4억/1.6억)
자산운용/적립액/수익률	• 적립액(2019): 전체 10.7조 USD, DB형 3.3조 USD, DC형 7.4조 USD (69.4%) • 수익률 (2017~2019년 연평균): 전체 9.5%, DB형 8.9%, DC형 9.8%
비용(수수료 등)	-
금융업권 동향	• 4유형은 퇴직연금 자산이 보험상품으로 구성되므로 보험회사의 선정이 중요함

2. 영국

가. 퇴직연금 지배구조

영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크게 신탁형(Trust Based, 이하, “기금형”이라 함)과 계약형(Contract Based)으로 나눌 수 있다. 기금형의 경우 사용자가 기금운용위원회(Trust)를 구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Trust)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해 자산을 운용하되 신탁된 자산은 사용자와 분리되어 관리된다. 계약형의 경우 가입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이 운용된다. 사업자는 계약 시 제시된 조건(방법 등)에 따라 가입자의 자산을 운용한다.

〈표 Ⅲ-5〉 영국 퇴직연금의 기금형과 계약형 비교

구분	기금형	계약형
형태	DB형, DC형	DC형
운용 주체	운용위원회	퇴직연금 사업자
운용 원칙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이익에 우선해 자산을 운용하는 신의성실의무를 가짐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계약에 따라 자산이 운용됨
수급권보호	퇴직연금 자산은 사용자와 분리됨	각각의 계약자는 분리된 계좌를 소유
규제 (관리/감독)	연금감독청 및 FCA 규제	최동

자료: Aegon.com

기업은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DB형은 기금형을 DC형은 기금형 혹은 계약형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다. 즉, 기금형은 DB형, DC형에서 모두 선택될 수 있으나, 계약형은 DC형만 선택이 가능하다. 동일 직장 내 구성원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그룹개인연금(Group Personal) 혹은 스테이크홀더(Satke holder)⁴⁶⁾와 일반 개인연금⁴⁷⁾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형 혹은 계약형 선택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기금을 하나의 퇴직연금 사업자 혹은 운용주체(Trust)에 운용을 위탁하는 통합기금형(Master Trust)도 가능하다.

기금형은 기여금을 납입하는 사용자, 기금운용을 지시하고 수익권을 가진 가입자 그리고 수탁자인 기금의 3각 구조로 되어 있다. 영국 기금형의 특징은 계약형에 비해 높은 세제 혜택이 제공되거나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 장치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기금형은 계약형에 비해 더 많은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반납되었다. 따라서 기금형은 계약형에 비해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사용자에게는 조기 퇴사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계약형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기금형에 적용된 추가적 세제혜택은 2006년에, 그리고 조기 퇴사자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금 환급은 2015년 폐지되었다(Pension Act 2014 in section 36). 한편, 영국 기금형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및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지적

46) 스테이크홀더는 기업주가 기여금을 납입해 주거나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음

47) 영국의 경우 개인연금 역시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퇴직연금과 유사한 지배구조를 가짐

된다. 즉, 사용자가 운영위원회(Trust)를 구성하므로 사용자는 자산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간보고서 작성의무, 감사의무, 운영위원회 수탁자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불 의무 등을 진다. 이러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용자의 책임과 부담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DB형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계약형의 경우 사용자는 기여금 납입 이외에는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연금법 2004). 일반적으로 계약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주로 보험회사)가 관리하므로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단순형, 위험관리형, 공격형 펀드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원하는 경우 수백 개의 펀드를 제공한다. 영국의 계약형 DC는 기금형의 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하는 독립운용위원회(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 IGC)를 설치해야 한다. 독립운용위원회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비용에 상응하는 편익을 제공했는지, 투자상품 및 디폴트옵션 등이 가입자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업자 정책이 보험계약자나 투자자에 적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는지 등을 평가한다. 독립운용위원회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자는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⁴⁸⁾

영국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보호와 관리감독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Pensions Act 2004에서 수급권보호를 위해 Financial Assistance Scheme(FAS)를 설립하였다. FAS는 DC형 제도와 2005년 4월 이전에 설립된 DB형 제도를 보장하고, 2005년 4월 이후 설립된 DB형 연금제도는 연금보호기금(Pension Protection Fund; PPF)에서 보장하는 이원화된 수급권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박희진 2019). FAS는 세금으로 운영되나 연금보호기금(PPF)⁴⁹⁾은 각 DB형 연금기금에서 일정 보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⁵⁰⁾ 2016년 FAS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FAS 제도에서 수행된 업무는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FSCS)로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⁵¹⁾

영국 퇴직연금 관리감독은 연금노동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DWP)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연금감독청(The Pension Regulator; TPR)과 FCA(Financial Conduct

48) FCA, "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s" (<https://www.fca.org.uk/firms/independent-governance-committees>)

49) PPF는 2020/2021기준 939개의 연금제도를 인수하여 £361억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27만 명이 넘는 근로자와 퇴직자를 보호하고 있음

50) FAS 가입자 수는 2020/2021 기준 14만 명임

51) FSCS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PPF는 DB형 펀드의 부족분을 지급해 주는 펀드임

Authority)가 관리·감독을 받는다.

연금감독청(The Pension Regulator: TPR)은 Pension Act 2004에 의해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신탁형 퇴직연금을 규제하고 수탁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되 특히 DB 적립률 강화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2007년 이후 DC형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판매업자를 규제한다.

나. 퇴직연금 현황 및 특징

1) 도입/가입 및 기금 현황

영국 퇴직연금 형태별로 제도 수와 가입자 수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제도 수의 경우 DC 기금형이 27,050개로 가장 많고 DB 기금형이 4,800개, DC 계약형이 1,870개 순이었다. 제도 수 변화 추이를 보면 DB 기금형은 2016년 5,240개에서 2021년 4,800개로, DC 기금형은 동 기간 34,730개에서 27,050개로, DC 계약형은 2,500개에서 1,870개로 감소하였다. 즉 모든 유형에서 제도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입자⁵²⁾(Active members)의 경우 DC 기금형이 947.3만 명으로 가장 많고, DC 계약형이 536.3만 명, DB 기금형이 50.5만 명이다. 제도별 납입자 추이를 보면 전체 기준으로 2016년 931만 명에서 2021년 1,534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DB 기금형은 125만 명에서 50.5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DC 기금형은 388만 명에서 947만 명으로, DC 계약형은 417만 명에서 53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제도 수는 감소하나 납입자 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특히 DC형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영국의 경제활동인구 수 3천 4백만 명을 고려하면 납입률은 43.5%이며, 가입률로 하면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⁵³⁾

52)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현재 납입하고 있는 자(납입자), 체납 혹은 납입 유예로 특정시점에 납입하고 있지 못한 자(체납자 등)로 구분할 수 있음

53) 통계청/KOSIS/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OECD)

〈표 III-6〉 영국의 퇴직연금 형태별 현황

(단위: 천 명, 개)

구분	전체 가입자 ¹⁾ 가입자 ²⁾	DB 기금형		DC형			
				기금형		계약형	
		가입자	제도 수	가입자	제도 수	가입자	제도 수
2016	9,312	1,255	5,240	3,883	34,730	4,174	2,500
2017	11,201	1,170	5,170	5,151	33,650	4,880	2,620
2018	12,864	898	4,960	6,778	31,940	5,188	2,190
2019	14,787	688	4,940	8,459	31,170	5,640	2,140
2020	15,253	631	4,920	9,275	28,810	5,347	2,030
2021	15,341 (100.0)	505 (3.3)	4,800	9,473 (61.7)	27,050	5,363 (35.0)	1,870

주: 1) DB와 DC를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가 제외되어 DB와 DC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 않음

2) 가입자 수는 기금형과 계약형의 비교를 위해 퇴직연금을 납입자(채납자 및 수급자 제외)를 기준으로 함

3) () 안은 전체 가입자 수 대비 제도유형별 가입자 수 비율임

자료: The Pension Regulator(각 연도)

이러한 현상을 제도별 평균 가입자 수로 살펴보면, DB형은 감소하나 DC형은 기금형과 계약형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계약형의 평균 가입자 수가 기금형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약형의 비용적 장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계약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7〉 영국 퇴직연금 제도별 평균 납입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DB 기금형	DC 기금형	DC 계약형
2016	239.5	111.8	1,669.6
2017	226.3	153.1	1,862.6
2018	181.0	212.2	2,368.9
2019	139.3	271.4	2,635.5
2020	128.3	321.9	2,634.0
2021	105.2	350.2	2,867.9

자료: The Pension Regulator(각 연도)

영국에는 28,360개의 퇴직연금 기금이 있으며 이 중 94%(26,720개)가 12인 미만의 소규모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기금 중의 84%(22,350개)가 RSS 기금(Relevant Small Scheme) 혹은 EPP(Executive Pension Plan) 형태로 운용된다.⁵⁴⁾ 특히 RRS, EPP 등과 같이 소규모 기금들은 다른 퇴직연금 기금에 비해 간소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다. RRS 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의사결정권자가 되며, 기금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혹은 독립된 수탁자가 결정하게 된다. EPP 기금은 회사가 유일한 사용자이자 단독 수탁자인 경우이거나 운용위원회 구성원이 회사의 전직 혹은 현직 이사인 사람이 1/3을 포함하는 형태이다.

〈표 Ⅲ-8〉에 의하면, 영국의 2020년 12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기금 수, 가입자 수, 적립금 규모는 각각 1,560개, 2,172만 명, 874억 5,800만 파운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사업장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금 수는 감소하고 가입자 수와 적립금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금 수는 12명 이상 99명 이하에서 760개로 약 절반인 48.7%이고, 가입자 수는 5,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96.6%이며, 적립금도 5,000명 이상 사업장이 88.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영국의 경제활동인구 수(3천 4백만 명) 기준으로 가입률을 추정해 보면 64%이며 12인 미만 사업장을 고려하면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⁵⁵⁾

〈표 Ⅲ-8〉 영국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현황(2020년)

구분 \ 사업장 규모	12~99명	100~999명	1,000~4,999명	5,000명 이상	전체
기금 수(개)	760 (48.7)	420 (26.9)	240 (15.4)	140 (9.0)	1,560 (100.0)
가입자 수(천 명)	28 (0.1)	158 (0.7)	542 (2.5)	20,994 (96.6)	21,722 (100.0)
적립금 (백만 파운드)	493 (0.6)	2,310 (2.6)	7,272 (8.3)	77,382 (88.5)	87,458 (100.0)

주: 1) 가입자 수는 납입자를 포함한 체납자, 납입 유예자까지 포함한 모든 가입자이므로 앞의 납입자 수보다 많을 수 있음
 2) () 안은 전체 대비 비율임
 자료: The Pension Regulator(2021)를 재구성함

54) The Pension Regulator(2021), DC Trust scheme return data 2020-2021

55) 통계청/KOSIS/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OECD)

영국의 대표적인 기금형 형태로 통합기금형(Master Trust)이 있다. 영국은 2017년부터 여러 사업장들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통합기금형을 시행하고 있다. 통합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정직성 기준으로 기금이 구성원이 정직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제도의 완비성으로 기금이 운영되기 위한 IT 기반과 운영과 지배구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으로 기금이 외부적 충격에 대해 가입자보호(수급권보호)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존재해야 한다. 넷째, 통합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금융회사 혹은 자연인 등 기준을 충족하는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통합기금은 기금운동을 위한 자금계획 및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현재 영국에는 37개 통합기금⁵⁶⁾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1,600만 명의 가입자, 360억 파운드의 자산이 속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보험회사 포함) 등이 기금을 설립해야 하는데, 일부 2/3 이상의 통합기금이 상업적 기반에 의해 설립되었다. 연금감독청(The Pension Regulator)은 제도가 요구한 기준들을 충족한 통합기금들이 기존 기금들에 비해 제도의 정직성, 소비자 보호 등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⁵⁷⁾

2) 자산운용 현황

영국 DC 기금형의 기금운용 특징은 주로 여러 펀드를 조합한 상품인 조합형 펀드(Pooled Investment Vehicles; PIV)에 대부분 투자한다는 것이다.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의 PIV 투자는 2,230억 파운드, 직접투자는 190억 파운드, 보험상품 투자는 10억 파운드로 전체 자산운용에서 PIV 투자 비중이 96% 수준이다. 이러한 PIV 투자의 증가 추이를 보면 2019년 4분기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4분기는 1,840억 파운드가 투자되어 전년대비 29.6%, 2021년 4분기는 2,230억 파운드가 투자되어 전년 대비 5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6) 구체적 통합기금에 대한 내용은 〈부록 II〉를 참조 바람

57) The Pension Regulator(2019)

〈표 III-9〉 영국 DC 기금형 퇴직연금의 자산 및 투자

구분		2019년 4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4분기
자산운용	총 PIV 투자(십억 파운드)	142(97.3)	184(96.8) 〈29.6〉	223(95.9) 〈57.9〉
	총 직접투자(십억 파운드)	4	14	19
	보험투자(십억 파운드)	0	1	1
	소계	146	199	243
부채		198	226	218

주: 1) ()은 자산운용 소계 대비 비율(%)임

2) 〈 〉은 전년 대비 자산운용 증가율(%)임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Financial Survey of Pension Schemes

3) 수수료

영국의 DC형 적격 퇴직연금 수수료는 0.75% 상한선(Charge cap)이 적용된다. 2020년 기준 전체 DC형의 평균 수수료는 0.48%였고,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비적격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0.53%이다. 한편 기금형의 수수료는 0.49%로 DC형 적격 퇴직연금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특별한 펀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Fund Manager Expense Charge: FMEC)가 발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72%는 추가 수수료가 없었지만, 나머지 28%의 퇴직연금에는 추가수수료(FMEC) 0.08%가 부과된다. 그리고, 투자 펀드의 유지 수수료(Portfolio Transaction Costs)가 존재하는데, 전체 펀드의 평균 유지 수수료는 0.069% 였으며, 수수료가 있는 펀드만의 평균은 0.083%이다. 그리고 펀드의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 수수료(Transaction Costs)가 발생하는데, 이체 수수료는 0.26% 수준이다.⁵⁸⁾

이렇게 영국의 퇴직연금 수수료가 낮을 수 있는 주요원인으로,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자동으로 가입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신규 컨설턴트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은퇴로 인해 납입 중지 시 비용이 가중될 수 있게 하는 현역가입자 할인제도(Active Member Discounts; AMDs)를 금지하였기 때문이다(김병덕 2019). 이러한 영국의 낮은 퇴직연금 수수료는 정부의 적극적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NEST 제도의 낮은 수수료 정책 등에 기인한다.

58)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21)

다. 소결

2012년 자동가입제도 이후 영국 퇴직연금 가입자는 빠르게 늘어 2019년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64.0%(12인 이상 사업장) 수준이다. 영국은 기금형이 우위에 있으나 계약형이 공존하며, 기금형은 DB형, DC형에서 모두 선택할 수 있으나, 계약형은 DC형만 선택이 가능하다. 기금형의 경우 2015년 이전에는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금은 사업자에게 귀속되었으나, 계약형과의 형평성 문제로 2015년 이후 계약형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2016~2021년 동안 제도 수는 감소하고 가입자 수는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대형화 추세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III-10〉 영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지배구조 특징	- 기금형 우위형(DB는 기금형, DC는 기금형, 계약형 공존) - 계약형 제도 수가 적으나 단위당 적립금 많음(계약형 기금의 대형화) - 영리법인인 금융회사가 수탁법인으로 참여가 가능
퇴직연금 제도/기금 수	- 전체 기금 수(12인 이상 사업장): 4,100개(2010), 2,740개(2015), 1,560개(2020), 기금 개수는 지속적 감소(기금 대형화) - 사업장 규모별(2010 → 2020): 12~99명 2,910개 → 760개, 5,000명 이상 80개 → 140개 (2020) ⇒ 대기업 기금 수 증가
가입자 수/가입률	- 전체 가입자: 2천 2백만 명(12인 이상 사업장, DC 기금형, 2020) - 납입자 수(DC형): 기금형 950만 명(62.9%), 계약형 560만 명(37.1%) - 퇴직연금 가입률: 64.0%(12인 이상 사업장, 2019) - 퇴직연금 납입률: 43.5%(2019)
자산운용/적립액/수익률	- 주로 Pooled Investment Vehicle로 운용 - 집합투자운용 도입(CDC) - 적립액: 전체 875억 파운드(2020),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2~99명 4.9억 파운드, 5,000명 이상 774억 파운드(2020) ⇒ 기금 대형화 - 수익률: 9.5%(2020)
비용(수수료 등)	- DC형 수수료: 0.48%(2020년, 수수료 상한 0.75%) - 개인연금 등 비적격연금의 수수료: 0.53%(2020) - 펀드 가입 시 추가수수료 발생: 가입자의 28%가 0.08% 부담
금융업권 동향	- 계약형은 주로 보험회사가 참여 - 통합기금(Master Trust)에도 보험회사들이 참여

영국 퇴직연금의 특징 중 하나로 여러 기금을 통합한 통합기금제도가 2017년 도입되어 약 1,600만 명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통합기금형에 가입되어 있다. 통합기금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통합기금제도는 기금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통합기금 설립 등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기금 운영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구조에서는 기금형과 계약형에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호주

가. 퇴직연금 지배구조

호주는 19세기 중반에 최초의 퇴직연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 연금 역사가 깊지만 퇴직연금의 사용자 기여율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강제 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제도를 1992년 7월에 도입했다. 슈퍼애뉴에이션 제도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며, 최저 기여 수준은 1992년 5%에서 2022년 1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슈퍼애뉴에이션 제도에서는 월 소득 450 호주 달러(AUD) 이하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 18세 미만의 비정규 근로자,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의무가입대상이다(이태호 외 2015).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은 기금형으로 운영되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⁹⁾ 가입자는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자기관리기금⁶⁰⁾의 5가지 기금 중 선택할 수 있다(이경희 2018). 기업형기금은 단일 사용자 또는 상호 연관된 복수 사용자가 운영한다. 가입자격은 근로자로 제한되지만, 기금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다. 산업형기금은 주로 특정 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지명한 사람이 관리한다. 2005년부터 가입대상이 특정 산업의 근로자로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다.⁶¹⁾ 공적기금은 호주 연방, 주,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59) 호주에는 기금형 외 계약형인 퇴직저축계좌(Retirement Saving Account; RSA)도 있음. 가입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계좌 및 퇴직저축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음. 다만 퇴직저축계좌가 호주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기술함

60) 기금규모가 적어 소형기금(Small Fund)로 불리기도 함(황원경 2015; 이태호 외 2015)

61) Liston Newton Advisory(2019)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공공부문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매형기금은 주로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 일반인은 보험대리점이나 재무설계사를 통해 소매형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수탁법인⁶²⁾이 운영하는 기금형 외에 근로자 또는 은퇴자가 자신의 기금을 설립하고 수탁자가 되어 운영하는 자기관리기금이 있다. 주로 부유층이 가계 단위로 설립하는데, 2020년 관련 규정이 수정되면서 최대 6인까지 가입할 수 있다.⁶³⁾

호주 퇴직연금 시장에서 공적기금을 제외하고 근로자는 기업형기금 외에 비영리로 운영되는 산업형기금과 영리로 운영되는 소매형기금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은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소매형기금, 산업형기금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탁자가 되어 자기관리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

〈표 III-11〉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퇴직연금 기금 유형

유형	내용
기업형기금 (Corporate Funds)	-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의 원형 - 근로자를 위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금 - 근로자의 가입이 원칙이나, 기금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도 가입 가능
산업형기금 (Industry Funds)	- 특정 산업에 속한 근로자의 퇴직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 - 가입대상이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한 공통편도로 변화
공적기금 (Public Sector Funds)	- 정부기관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만 가입 - 가입자가 공공부문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여금 납입이 가능
소매형기금 (Retail Funds)	-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영리법인) - 보험대리점이나 재무설계사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해 비용이 부과됨
자기관리기금 (Self-Managed Super Funds; SMSFs)	- 최대 6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기금 - 가입자가 수탁자가 되어 기금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짐 - 주로 부유층이 가계 단위로 설립하여 운영

자료: 황원경(2015); 이경희(2018)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함

62) 기금형의 수탁법인은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회사, 사용자주도, 공공부문, 연합형, 상장회사 등 다양함

63) Penny Pryor(2021)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DC)이 지배적이다. 2020년 확정기여형(DC) 계좌 수는 2천 2백만여 개로 2천 3백만여 개 퇴직연금(자기관리기금 제외) 계좌에서 95.0%를 차지했다. 적립금 기준으로 보면 전체 퇴직연금 대비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은 79.0%에 달했다.

〈표 III-12〉 호주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규모(2020년)

(단위: 천 개, %, 백만 AUD)

구분		확정기여형(DB)	확정기여형(DC)	DB & DC	전체
계좌	개수	876	22,132	273	23,289
	비중	3.8	95.0	1.2	100.0
적립금	금액	330,536	1,598,191	95,187	2,023,914
	비중	16.3	79.0	4.7	100.0

자료: APRA(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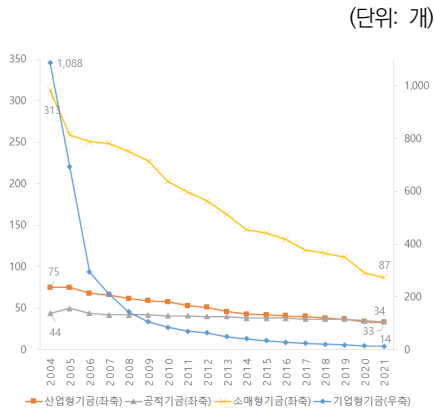
나. 퇴직연금 현황 및 특징

1) 기금 개수 및 가입자 수

지난 10여 년 호주 APRA⁶⁴⁾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 개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개수는 기금의 활발한 합병 활동으로 인해 각각 2004년 75개, 44개, 313개에서 2021년 34개, 33개, 87개까지 감소하였다.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진 기업형기금의 개수는 2004년 1,088개에서 2021년 14개까지 급감하였다. 기업형기금 감소 과정에서 기업형기금의 적립금은 소매형기금이나 산업형기금으로 이전되었다. 이는 소규모 기업형기금에 비해 소매형기금과 산업형기금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운영관리비가 저렴하고, 투자상품 옵션이 많고, 운용전문가가 많다는 장점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경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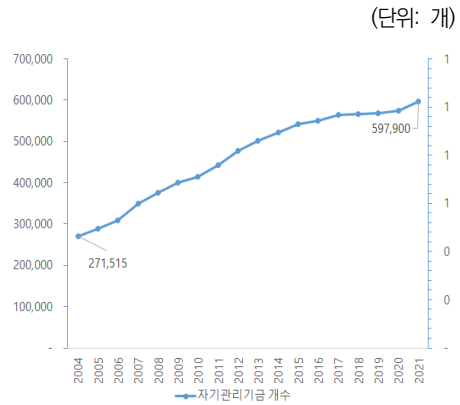
64) 호주금융감독청(APRA)은 호주의 재무 건전성 규제기관임.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소매형기금은 APRA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기관리기금은 6인 이하 가입자가 수탁자가 되고 직접 자산운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APRA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국세청(ATO)의 감독을 받음. 공적기금은 APRA의 감독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APRA의 감독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음

〈그림 Ⅲ-2〉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개수 변화 추이



자료: APRA(2021)

〈그림 Ⅲ-3〉 호주 ATO의 감독을 받는
자기관리기금의 개수 변화 추이



자료: ATO(2012, 2018); Australian Government

반면 ATO의 감독을 받는 자기관리기금 개수는 투자 자율권이 높아서 2004년 27.1만 개에서 2021년 59.8만 개까지 증가하였다.

ATO에 따르면 2020년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한 호주인은 약 1,70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근로자 수(1,291만 명⁶⁵⁾)보다 많다. 호주인은 여러 개의 퇴직연금 계좌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2020년 1개 퇴직연금 계좌만을 보유하는 호주인은 1,260만 명이며, 2개 이상의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는 호주인은 약 450만 명이다.

65)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22)

〈표 III-13〉 호주 퇴직연금 계좌 보유 수별 가입자 수 및 계좌 수 현황(2020년)

(단위: 만 명, 만 개)

퇴직연금 계좌 보유 수	가입자 수	계좌 수
1	1,260	1,260
2	340	680
3	80	250
4 및 그 이상	30	250
합계	1,700	2,440

자료: APRA, "Developments in the number and cost of multiple superannuation accounts"

〈표 III-14〉 호주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계좌 수 변화 추이

(단위: 만 개)

구분	2016	2018	2020
기업형기금	34	29	28
산업형기금	1,108	1,143	1,133
공적기금	353	354	354
소매형기금	1,298	1,140	815
자기관리기금	105	107	111
합계	2,898	2,773	2,440

자료: APRA, "Developments in the number and cost of multiple superannuation accounts"

그러나 지난 5년간 호주 퇴직연금 계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호주 퇴직연금 계좌 수는 2,440만 개로 2016년에 비해 약 460만 개가 줄어들었다.

호주 퇴직연금 계좌 수가 감소하면서 최근 4년(2017~2020년) 동안 2개 이상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는 비중은 각각 39%, 36%, 35%, 26%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⁶⁶⁾

2) 적립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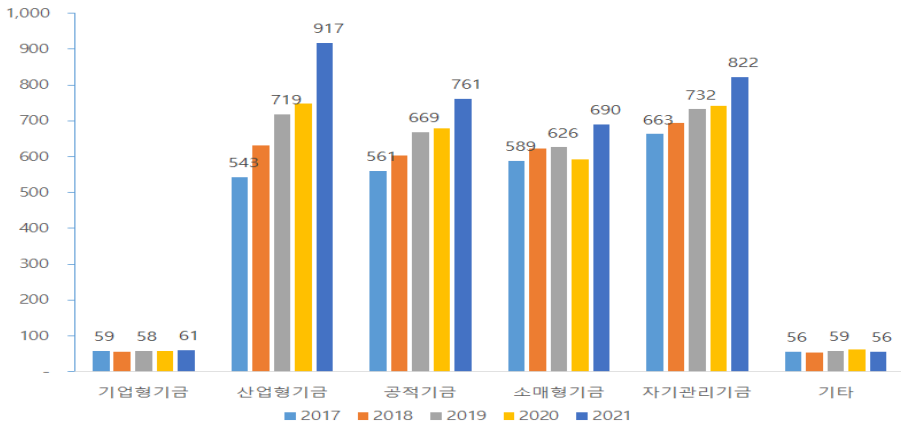
2021년 호주 퇴직연금 기금 적립금 규모는 3.31조 AUD로 2017년 2.47조 AUD 대비 33.8% 증가⁶⁷⁾하였다.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자기관리기금은 각각 2017년 5,430억 AUD, 5,610억 AUD, 5,890억 AUD, 6,630억 AUD에서 2021년 9,170억 AUD, 7,610억 AUD, 6,900억 AUD, 8,220억 AUD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형기금 및 기타 퇴직연금의 규모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한편, 2021년 산업형기금은 자기관리기금을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0%에서 27.7%로 확대되었다.

66) ASFA(2021)

67)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한국 퇴직연금 규모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으로 296조 원으로 2017년 168조에 비해 76.2% 증가함(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1, 2022)

〈그림 III-4〉 호주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적립금 변화 추이

(단위: 십억 AUD)



주: 기타 퇴직연금은 APRA의 감독을 받지 않는 공적기금, 보험펀드, 소규모 APRA 기금을 포함함
자료: ATO

3) 투자수익률

APRA의 감독을 받은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단기(1년 수익률) 투자수익률은 해마다 큰 변화를 보였지만, 유형별 중장기(5년 및 10년 평균수익률) 투자수익률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됐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 및 10년 평균수익률은 산업형기금(8.9%, 8.6%), 공적기금(8.0%, 8.1%), 기업형기금(7.5%, 7.5%), 소매형기금(7.2%,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형기금의 중장기 투자수익률이 다른 퇴직연금 기금들에 비해 높은 것은 기금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투자수익률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I-15〉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투자수익률 변화 추이

(단위: 십억 AUD, 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형기금	기금당 순자산	2.2	2.8	3.1	3.9	4.1
	1년 수익률	9.2	7.6	6.0	0.9	14.2
	5년 평균수익률	9.3	9.0	6.7	5.2	7.5
	10년 평균수익률	4.5	5.8	8.0	7.0	7.5
산업형기금	기금당 순자산	11.7	14.3	18.0	21.1	22.7
	1년 수익률	10.5	9.9	7.5	-0.7	17.8
	5년 평균수익률	10.2	9.3	8.3	6.2	8.9
	10년 평균수익률	4.9	6.5	8.7	7.7	8.6
공적기금	기금당 순자산	9.9	15.6	16.8	19.1	19.9
	1년 수익률	9.5	8.4	7.5	0.0	15.2
	5년 평균수익률	9.8	8.6	7.7	5.7	8.0
	10년 평균수익률	4.8	6.3	8.5	7.5	8.1
소매형기금	기금당 순자산	4.7	5.3	6.2	6.7	6.8
	1년 수익률	7.8	7.4	6.5	-2.1	17.1
	5년 평균수익률	8.1	7.0	6.2	4.2	7.2
	10년 평균수익률	3.1	4.9	6.9	5.8	6.8

자료: APRA(2021)

ATO에 따르면 2020년 자기관리기금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0.7%로 2019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자산가격 하락 때문이다. 기금 규모별 보면 2020년 기금 규모가 1,000만 AUD 이상의 자기관리기금의 투자수익률은 3.3%로 기금 규모가 5만 AUD 미만의 자기관리기금(-22.0%)보다 2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규모가 작은 자기관리기금보다 기금 규모가 큰 자기관리기금의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것은 기금 규모가 클수록 투자수익률은 높아진 것을 시사한다.

〈표 Ⅲ-16〉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 규모별 투자수익률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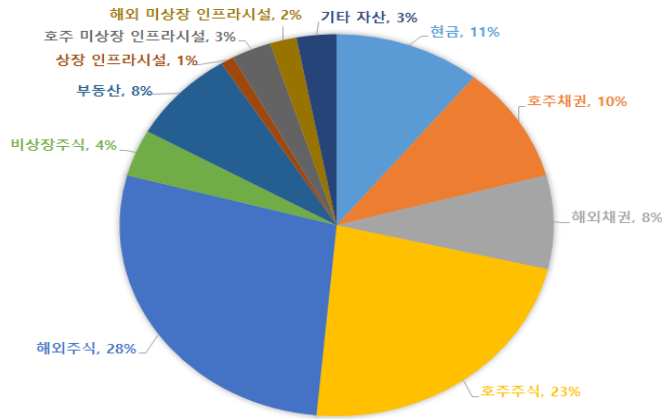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만 AUD 미만	-16.5	-15.6	-15.6	-19.8	-22.0
5~10만 AUD	-7.3	-5.9	-4.9	-8.6	-10.9
11~20만 AUD	-3.5	-0.9	-1.0	-2.6	-5.9
21~50만 AUD	0.0	4.4	3.7	2.9	-1.9
51~100만 AUD	1.5	6.9	6.0	5.9	-0.9
101~200만 AUD	2.4	8.4	8.4	7.0	-0.4
201~500만 AUD	3.4	10.2	7.8	7.5	0.5
501~1,000만 AUD	4.9	13.7	8.2	7.5	1.3
1,000만 AUD 이상	9.6	22.0	9.0	7.7	3.3
평균	3.7	11.3	8.0	7.3	0.7

자료: ATO

4) 자산배분

2021년 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적립금은 70% 이상이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으며 부동산, 인프라시설 등의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자산배분은 해외주식 28%, 호주주식 23%, 호주채권 10%, 해외채권 8%, 부동산 8%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되고 있다.

〈그림 III-5〉 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자산배분 비중(2021년)



자료: APRA(2022)

5) 수수료

호주 퇴직연금 기금에서 가입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기금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운용 관리, 자산관리(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운용관리 수수료는 일반관리비, 수탁자 지원/관리비, 계리 및 감사 비용, 영업 및 마케팅 비용, 가입자 관리비, 보험료 등이 있다. 운용관리 수수료 가운데 보험료는 퇴직연금 기금에서 가입자에게 사망, 영구장애, 소득보장과 같은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자산관리 수수료의 경우 직접 관리비, 간접 관리비, 기금 관리비, 자산운용 컨설팅비 등이 있다. 보통 운용관리 수수료는 정액 수수료와 정률 수수료의 방식으로 부과되지만, 자산관리 수수료는 정률 수수료 방식으로 부과된다.⁶⁸⁾ 한편, 퇴직연금 기금에서 가입자에게 개인별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이경희 2018).

2020년 APRA의 감독대상인 퇴직연금 기금들 가운데 공적기금(0.5%)이 가장 낮고 소매형 기금(0.8%)이 가장 높다.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의 수수료 수준은 모두 0.6%이다. 소매형기금의 수수료 수준이 다른 기금보다 높은 것은 영리법인 성격이 반영된 비용구조 때문이다. 한편, ATO의 감독을 받는 자기관리기금의 수수료 수준은 1.2%로 APRA의 감독을

68) 정액 수수료는 적립금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정률 수수료는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수수료임

받는 퇴직연금 기금들보다 더 높은데, 이는 가입자 수와 기금규모가 작을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표 Ⅲ-17〉 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수수료 수준(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자기관리기금
운용관리	0.2	0.3	0.2	0.6	0.5
자산관리	0.4	0.3	0.3	0.1	0.7
전체	0.6	0.6	0.5	0.7	1.2

자료: APRA; ATO

다. 소결

호주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DC) 형태의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호주 퇴직연금 기금 개수는 2021년 기준 59.8만 개를 기록하였으며,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근로자 수인 1,291만 명보다 높은 1,700만 명에 달하였다. 기금의 형태는 대형기금 중심으로 운영되며(기금 대형화),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를 수탁자(소매형기금)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기금을 소비자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적립금은 2021년 기준 3.1조 AUD로 호주 GDP의 1.6배까지⁶⁹⁾ 증가하였으며, 적립금의 70% 이상은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되었다. 즉 호주 연기금 자산배분의 특징은 주식투자 비중이 높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되고 있다. 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 및 수수료는 기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규모의 경제와 관련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수익률(5년 및 10년 수익률)은 2021년 기준 기금당 규모가 큰 산업형기금(8.9%, 8.6%), 공적기금(8.0%, 8.1%)이 모두 8%대 이상이며, 기금당 규모가 작은 기업형기금(7.5%, 7.5%), 소매형기금(7.2%, 6.8%)이 모두 8%대 미만이었으며, 특히 기금당 규모가 가장 작은 자기관리기금의 5년 평균수익률은 6.2%로 가장 낮았다. 수수료는 2020년 기준 자기관리기금(1.2%)에서 가장 높았고, 공적기금(0.5%), 기업형기금(0.6%), 산업형기금(0.6%), 소매형기금(0.7%)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당 규모가 가장 작은 자기관리기금의 수수료가 가장 높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69) 2021년 한국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96조 원으로 한국 GDP(2,266조 원)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임

특히, 운용관리 수수료에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기금에서 가입자를 위해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특징으로 보인다.

〈표 Ⅲ-18〉 호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지배구조 특징	• DC 기금형 절대적 • 소규모 기금 많지만, 대형기금 중심으로 시장 운영됨(기금 대형화) • 다양한 유형의 기금에 대한 선택 가능성 등 기금 간 경쟁 유도 • 영리법인인 금융회사가 수탁자(소매형기금)로 역할 가능 • 운용관리 수수료에 보험료를 포함하는 퇴직연금 기금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
퇴직연금 제도/ 기금 수	• 기금 60만 개(기업형 14개, 산업형 34개, 공적기금 33개, 소매형기금 87개, 자기관리기금 59.8만 개)
가입자 수/ 가입률	• 가입자 1,700만 명, 근로자 1,291만 명(2020년)
자산운용/적립액 /수익률	• 퇴직연금 기금 적립금의 70% 이상은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으며 33%가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음 • 적립액: 3.31조 호주 달러(산업형 9,170억 달러, 자기관리 8,220억 달러, 공적기금 7,610억 달러, 소매형 6,900억 달러, 기업형 610억 달러, 기타 56억 달러) • 규모의 경제 효과로 대형 기금의 수익률 높음(산업형, 공적기금, 기업형 순) • 5년, 10년 수익률: 산업형(8.9%, 8.6%), 공적기금(8.0%, 8.1%), 기업형(7.5%, 7.5%), 소매형(7.2%, 6.8%), 자기관리(6.2%, 미공개)(2020년)
비용(수수료 등)	• 규모의 경제에 따라 대형 기금의 수수료 낮음(0.5~0.7%, vs. 1.2%) • 기업형기금 0.6%, 산업형기금 0.6%, 공적기금 0.5%, 소매형기금 0.7%, 자기관리기금 1.2%(소규모 기금)
금융업권 동향	• 소매형기금 등을 통해 보험회사 등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가능

4. 일본

가. 퇴직연금 지배구조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1960년대 도입된 구(舊) 퇴직연금제도인 후생연금기금(Employee Pension Funds; 이하, “EPF”라 함)⁷⁰⁾과 세제적격 퇴직연금제도(Tax-Qualified Pension

70) EPF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 일부분을 기업이 퇴직연금과 함께 적립·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Plans; 이하, “TPP”라 함)⁷¹⁾,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도입된 신(新)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
부기업연금(Defined Benefit Corporate Pension Plans; 이하, “DBP”라 함)과 확정각출연
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s; 이하, “DCP”라 함)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신퇴
직연금제도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하여 TPP가 2012년에 폐지되었으며, EPF는 2014년에
신규 가입이 금지된 이후 2023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DBP
와 DCP만 남게 된다.

일본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기금형(Fund-Type)과 규약형⁷²⁾(Agreement-Type)의 두 가
지 형태로 운영된다. DBP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업이 기금형과 규약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DCP는 우리나라 확정기여형제도와 동일하며 규약형으로 운영된다. 기금형에는
EPF와 DBP 기금형이 있으며, 규약형에는 TPP, DBP 규약형, DCP가 있다.

기금형은 기업과 별개로 후생노동성의 인가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독립된 연금기금을 설
립하고, 그 연기금이 연금규약에 기초해서 자산을 관리·운용하여 연금 급부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1966년 후생연금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금형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DB형으로
운영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기금형도 집행기관으로 기금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며, 복수의 금융회사(은행·보험
회사·증권사 등)가 수탁업무에 공동참여하여 위탁 관리·운용한다.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2021) 조사에 의하면 1개의 연기금에 평균 6.8개의 금융회사가 운용관리에 참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기금형에서는 연기금의 운용지시에 의해 수탁 금융회사
가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기금이 운용상품 및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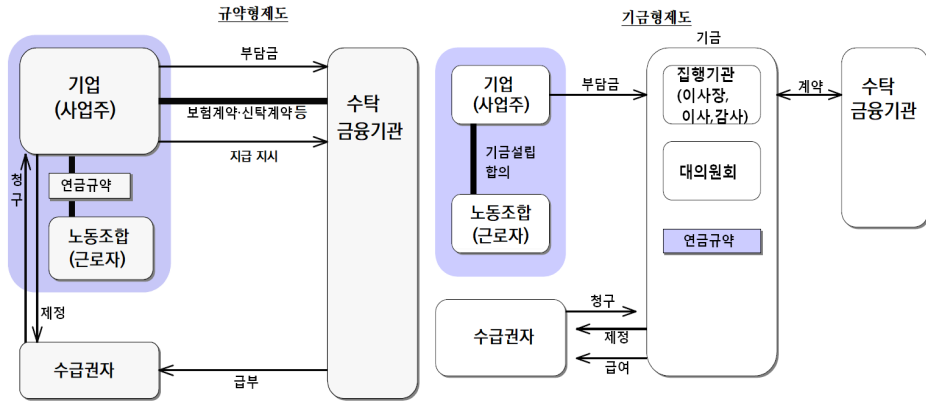
규약형은 근로자 동의와 후생노동성의 승인을 받은 연금규약을 기초로 기업이 금융회사
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 금융회사가 연금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여 연금 급부를 지급하
는 구조이다.

록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한 공·사역할 분담형 퇴직연금제도임. 이처럼 국가가 지정한 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공
적연금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적용제외(Contract out) 제도라고 부름

71) 과거 우리나라 퇴직보험과 유사한 제도임

72) 계약형과 동일한 의미이나 일본의 경우 규약형으로 용어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약형으로 명명함

〈그림 III-6〉 일본 퇴직연금 기금형/규약형 지배구조



자료: 이상우 외(2012)에서 재인용함

나. 퇴직연금 현황 및 특징

1) 도입/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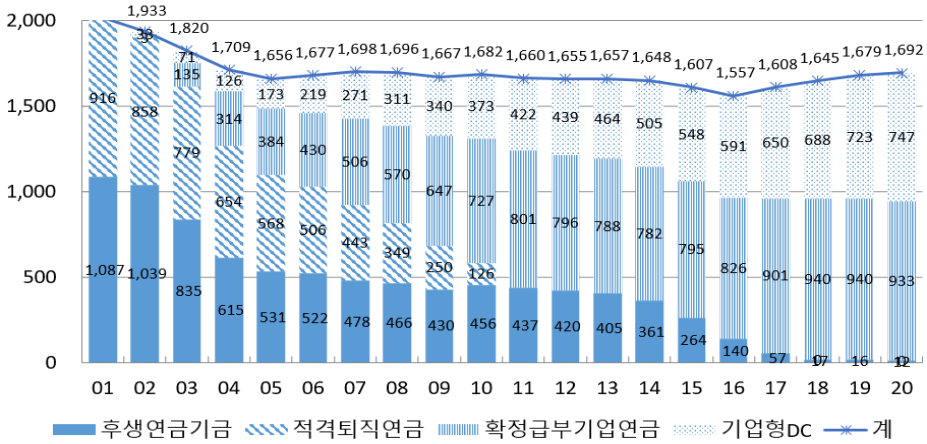
일본 인사원 조사(2020)에 의하면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도입률은 91.9%(2016년, 92.6%)이다.⁷³⁾ 또한, 퇴직급여제도 도입 기업 중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복수응답⁷⁴⁾을 기준으로 각각 91.2%, 45.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비중이 높은 주 원인은 연금재원을 사내유보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를 선호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73) 人事院(2021)

74) 일본은 하나의 사업장이 퇴직일시금/퇴직연금 또는 기금형/규약형 등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는 복수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많음

〈그림 Ⅲ-7〉 일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주: 우리나라의 IRP와 유사한 iDeCo는 타 연금과 병행 가입이 대부분이므로 제외함

자료: 厚生労働省(2021)

경제활동인구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25.0%이며, 근로자의 가입률은 37.7%이다.⁷⁵⁾ 일본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2000년 2,100만 명을 정점으로 신규 취업인구 감소와 베이비부머 대규모 은퇴 등을 원인으로 2020년 1,692만 명으로 정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1960~1990년대에는 EPF와 TPP가 약 '6:4'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초에 도입된 신타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퇴직연금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DBP와 DCP 가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DBP와 DCP 가입자가 각각 약 933만 명과 941만 명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DBP 기금형/규약형으로 구분된 가입자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나 기금형 가입자 수는 DB형(DBP+EPF) 가입자 약 943만 명 중에서 약 876만 명으로 추정된다.⁷⁶⁾ 이는 2020년 전체 가입자 1,692만 명 중에서 약 52%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높은 비중은 2001년 EPF 이탈자 일부가 DBP 기금형으로 전환하여 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기업의 기금형 도입률은 규약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5) 후생연금보험 가입자 6,762만 명 중(경제활동인구)에서 근로자는 4,488만 명임(厚生労働省 2021)

76) 기업연금연합회 조사에 의한 DBP 중에서 기금형 가입자 구성비(92.9%)를 가정한 추정치임(企業年金連合會 2010)

일본 인사원(2020) 조사에 의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복수 가입 포함)은 DBP, DCP, EPF가 각각 60.1%, 54.4%, 4.9%의 순으로 높으며, DBP 규약형/기금형 도입률은 각각 41.9%,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DBP 기금형과 EPF 도입률을 단순 합산한 기금형 도입률은 24.4%p(19.5%+4.9%)인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과 비교할 경우 규약형 도입률은 80.1%(16, 42.4% + 37.7%)에서 96.3%(20, 41.9% + 54.4%)로 증가한 반면 기금형 도입률은 31.4%(16, 12.0% + 19.4%)에서 24.4%(20, 19.5% + 4.9%)로 감소하였다.

〈표 III-19〉 일본 기업의 퇴직연금 유형별 도입 비중(2020년, 복수 가입 기업 포함)¹⁾
(단위: %)

구분	DBP			DCP 규약형	EPF 기금형	사내연금	기타
	규약형	기금형	소계				
2016	42.4	12.0	53.4	37.7	19.4	0.5	9.9
2020	41.9	19.5	60.1	54.4	4.9	1.4	2.8

주: 1) 하나의 사업장에서 규약형과 기금형, 또는 DBP와 DCP 등에 동시 가입하는 복수 가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DBP에서 규약형, 기금형의 합이 소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복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임
자료: 人事院(2021)

기금형과 규약형 제도 수⁷⁷⁾는 2020년 각각 737개, 17,763개로 규약형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약형 제도 수는 1,009개('03)에서 17,763개('20)로 약 18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기금형 제도 수는 1,509개('03)에서 737개('20)로 0.5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III-20〉 일본 퇴직연금 기금형/규약형 제도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03	2006	2010	2018	2020
기금형	1,509	1,263	1,208	771	737
규약형 ¹⁾	1,009	3,648	13,145	18,352	17,763

주: 1) 규약형은 EPF와 DBP 규약형, 기금형은 DBP 기금형과 DCP를 포함함
자료: 厚生労働省(2021)

기금형 도입률과 제도 수가 감소한 이유는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자산운용 실패로 인한 EPF 부실화, EPF의 적용제외(Contract out)제도의 폐지, AII 퇴직연금기금 사기 사건에 따른

77)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기금형/규약형 제도(Plan) 수 기준임

사후처리를 위한 EPF 폐지 결정 등으로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자산운용 현황

일본 퇴직연금 자산규모는 2020년 98.8조 엔이다.⁷⁸⁾ 그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79.7조 엔에서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90.5조 엔, 98.8조 엔 규모로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TPP와 EPF가 감소한 반면 신퇴직연금제도인 DBP와 DCP는 각각 67.5조 엔과 16.3조 엔으로 증가하였다. 기금형 자산규모는 EPF가 15조 엔이지만, DBP 기금형 자산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 기금형 자산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퇴직연금 DB/DC형 유형별 자산 비중은 각각 83.5%, 16.5%이다.

〈표 III-21〉 일본 퇴직연금 유형별 자산규모 추이

(단위: 조 엔)

구분	유형	2001	2005	2010	2015	2017	2019	2020
TPP	DB	22.7	17.3	3.1	0	0	0	0
EPF	DB	57.0	37.5	27.9	24.2	16.6	13.4	15.0
DBP	DB	0	33.0	42.0	57.9	62.1	61.2	67.5
DCP	DC	0	2.2	5.0	9.6	11.7	13.5	16.3
전체		79.7	90.1	77.9	91.7	90.5	88.1	98.8

주: EPF는 2014년부터 신규 가입 중지,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에 완전 폐지됨
 자료: 리そな年金研究所(2021. 7)

일본 기금형의 권역별 시장점유율은 공식 통계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 다만, 다음 〈표 III-22〉와 같이 전체 DB형의 권역별 시장점유율⁷⁹⁾⁸⁰⁾은 2020년에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가 각각 47.1%, 27.6%, 25.4%를 차지하고 있다.

78) 2022년 7월 1일 기준 환율로 약 935조 원 규모임

79) 「기업연금 수탁형태별 수탁고 현황」을 활용함

80) DB형 제도인 EPF가 2014~2023년 폐지될 예정에 있어 현재 EPF가 거의 운영되지 않으므로 DBP 시장점유율을 DB형 시장점유율로 간주함

〈표 III-22〉 일본 금융권별 DB형¹⁾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²⁾	1995	2000	2010	2020
보험회사	41.2	24.8	21.8	25.4
증권사	4.3	26.6	29.9	27.6
은행	54.6	48.5	48.9	47.1

주: 1) DB형은 EPF와 DBP를 포함한 수치임

2) 법규상 금융회사는 DB형을 생보, 신탁, 투자자문 계약으로 수탁할 수 있음

3) 원문상 '생보, 신탁, 투자자문' 계약 비율을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 점유율로 간주함

자료: 企業年金連合会(2021)

1995년 대비 2020년의 생명보험회사 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증권사 점유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회사 점유율이 감소한 이유는 구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의 축소, EPF/TPP의 폐지, 운용실적 악화로 가입자가 이탈하였고 그 이후 신 퇴직제도하에서 보험회사로 회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에서는 생명보험회사들이 퇴직연금 운영관리업무 아웃소싱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생명 등 7개 생명보험회사들이 출자 중인 운영관리업무 아웃소싱 전문회사를 2023년까지 통합하여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합의하고 향후 참여 보험회사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⁸¹⁾

일본 기업연금연합회(2020) 조사에 의하면 일본 DBP 자산운용은 기금형과 규약형 모두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금형의 경우 실적배당형 비중이 규약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일본 DBP 기금형과 규약형의 자산 구성비

(단위: %)

구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단기 자산
	국내 채권	외국 채권	일반 계정	소계	국내 주식	외국 주식	헤지 펀드	기타	소계	
기금형	20.31	18.13	15.48	53.92	10.00	14.99	5.35	10.48	40.82	4.66
규약형	19.27	16.98	25.27	61.52	9.44	15.32	2.63	7.34	34.73	3.74

자료: 企業年金連合会(2021)

81) 日本生命保険 보도자료(2021. 9. 21), “企業年金の制度管理事務における共通プ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について”

동 조사에 의한 기금형과 규약형 DBP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2020년 각각 11.38%, 10.1%로 기금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6년, 2019년에는 규약형 수익률이 기금형보다 높으므로 기금형과 규약형 수익률 성과를 단순 비교 또는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표 Ⅲ-24〉 일본 DBP 기금형/규약형의 자산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기금형	3.25	4.29	1.45	-1.49	11.38	3.78
규약형	3.40	3.99	1.18	-1.40	10.01	3.36

자료: 企業年金連合会(각 연도)

또한, 투자유형별 DBP 자산운용 수익률(2020)은 기금형과 규약형의 국내·외 채권 투자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기금형의 국내·외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기금형/규약형의 지배구조 차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 비중 변화가 수익률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Ⅲ-25〉 2020년 일본 DBP 기금형/규약형의 투자유형별 자산운용 수익률

(단위: %)

구분	국내채권	국내주식	외국채권	외국주식
기금형	0.19	39.93	4.50	54.00
규약형	-0.14	35.84	4.76	50.36

자료: 企業年金連合会(2021)

다. 일본 기금형 퇴직연금의 한계와 극복

1) 일본 AIJ 사건 발생과 원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기금형, 계약형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금형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AIJ 퇴직연금기금 사기 사건(AIJ 사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2012년 운용회사의 운용자금의 불법 투자로 가입자의 은퇴 자산이 사라지고, 연기금 연쇄 파산과 기금형(EPF)이 폐지되는 이른바 'AIJ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 사건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맡긴 퇴직연금기금(EPF) 자산을 금융회사가 파생금융상품 등 대체상품에 불법적으로 투자하여 원금에 90%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AIJ투자자문사(수탁운용관리사)'에 가입한 퇴직연금기금이 연쇄 파산하였으며, 여기에 은퇴자금을 맡긴 가입자가 노후파산에 직면한 바 있다.

피해규모는 84개 EPF 연기금과 중소기업 가입자 약 88만 명이 맡긴 연금자산 1,458억 엔 중에 1,377억 엔의 손실이 발생하여 88개 연기금이 파산위기에 직면하였다. 후생노동성 실태조사(2015. 11)⁸²⁾에 의하면 전체 EPF 연기금 377개 중에서 247개 연기금이 해산하였거나 해산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건의 주요 원인은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주의 부족, 업무 태만, 다양한 불법적 행위와 관련된다. 예컨대, 32개 연기금에서 사업비 잉여금을 불법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각종 위원회의 회의출석 태만 및 회의결과 미기록, 연기금의 금품수수 및 횡령, 연기금 사무국의 업무 및 주의 태만, 감사결과 누락 등이 발생하였다.⁸³⁾ 또한, 이원화된 후생노동성·금융청 간 연기금 감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부재와 역할분담의 불투명성, 감독당국 내부의 정보전달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연기금 대부분이 비전문가에 의해 연금사업자 선정 및 자산운용 등 주요 의사결정이 수행되었고, 위험자산 비중 확대에 대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지배구조 개선 조치와 영향

AIJ 사건 이후 수급권보호와 수탁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의 자산운용 방법의 개선이 있었고, 사후감시 기능 강화 관련 퇴직연금 관련 법규 개정과 자산운용 감독당국인 금융청의 금융상품거래법규 개정 등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행되었다.

첫째, 후생노동성의 자산운용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수탁자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분산 투자 철처와 자산배분전략 수립 의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였다. AIJ 운용

82) 厚生労働省(2015)

83) 후생노동성의 조사(2012)에 의하면 588개 연기금 중에서 공무원이 재취업한 기금 수는 352개(60%)로 집계됨 (厚生労働省 2012)

손실의 주범인 대체투자의 운용체계 강화를 위해 대체투자 운용 기본방침 수립, 대체투자 관리자 선정시 조사 의무, 기금위원회의 자산운용 연수 등을 강화하였다.

둘째, 사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위원회의 전문가와 실무경험자 참여, 의사록 작성 및 보고 의무, 가입자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운용컨설팅은 등록자로 한정, 운용컨설팅·운용기관간 이해상충 방지 도입 의무, 퇴직연금 감독 및 감시를 강화하였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해 연기금 자산에서 공적연금 자산운용 손실금의 원상회복을 일시 유예하는 등 지원하였다. 아울러 EPF 파산을 억제하기 위해 연기금에 대한 재정적 및 회계적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한편 후생연금기금 해산 유도정책을 실시하여 2023년까지 완전 폐지를 추진하였다.

셋째, 금융청은 신탁은행 등의 투자자문사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감독 검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위해 신탁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펀드 기준가액이나 감사보고서를 직접 입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인된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였다. 연기금에 대한 문제점 발견이 용이하도록 운용보고서에 기재되는 내용(펀드 설계, 기준가액 산출방법, 외부감사 유무 등)을 확충하고, 운용보고서의 교부 횟수도 확대(최소 매분기 1회)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엄벌하기 위하여 징역형 및 벌금 등의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투자운용업자 등에 대한 규제 감독 검사기준 강화를 위해 투자운용업자의 사업보고서 기재내용을 확충하고, 금융청 감독지침에 세부내용 추가하는 등 투자자문에 대한 감독, 검사강화를 추진하였다.

라. 소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퇴직급여제도가 임의제도이므로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퇴직연금 가입률과 도입률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더욱이 생산인구 감소와 베이비부머 대량 퇴직, 경기침체 장기화 등을 원인으로 퇴직연금 가입수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일본의 기금형은 196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고도경제성장기까지는 기금형과 규약형이 약 '6:4'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되었으나 거품경제 붕괴 이후 EPF의 재정 악화와 EPF의 공적기능 폐지, AIJ 사건 등에 따라 기금형의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기금형 가입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 퇴직연금 자산운용 특징은 규약형과 기금형 모두 실적배

당형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기금형이 규약형에 비해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았다. 수익률 비교에서 기금형과 규약형은 2016~2020년 동안 큰 차이가 없어 두 유형 간 수익률 격차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일본 'AIJ 사건'은 수탁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자산운용으로 가입자가 노후파산 위기로 내몰렸던 사건이다. 이후 후생노동성과 금융청은 수급권보호와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기금형의 법규와 금융상품거래법규를 개정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동 사건으로 인하여 EPF가 폐지되고,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동 사건은 역사적으로 신탁제도가 발달한 영·미와 달리 신탁문화가 정착되지 못해 발생한 일본 금융감독 시스템의 후진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기금형 도입 시 수급권 보호, 수탁자 감시체계 강화 등에 대한 우선적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26〉 일본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지배구조 특징	- 계약형 우위하에 기금형 공존(규약형: TPP, DBP 규약형, DCP, 기금형: EPF, DBP 기금형) 2012년 AIJ 사건 이후 기금형 위축(EPF, TPP 폐지)
퇴직연금 제도/기금 수	제도 수 변화(2003 → 2020): 기금형 1,509개 → 737개, 규약형 1,009개 → 17,763개
가입자 수/가입률	- 기금형 가입자: 876만 명,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1,692만 명 - 퇴직연금 가입률: 경제활동인구 기준 25.0%, 근로자 기준 37.7%, - 기금형 가입률 52.7%(기금형 가입자/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2020) - 기금형 도입률 24.4%(기금형 가입 기업/전체 퇴직연금 가입 기업, 2020)
자산운용/적립액/수익률	- 운용유형: 원리금보장 36.4조 엔(53.9%), 실적배당 27.6조 엔(2020) - 적립액: 98.8조 엔(퇴직연금 전체, 2020) 2016~2020년 평균: 기금형 3.78%, 규약형 3.36%(2020년: 11.38%(기금형), 10.01%(규약형))
비용(수수료 등)	-
금융업권 동향	DB형 시장점유율: 은행 47.1%, 증권사 27.6%, 보험회사 25.4%(2020)

IV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영향과 정책방향

1.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영향

2022년 우리나라는 중퇴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장 규모별, 제도유형 등 가입자 특성별로 구분된 기금형은 이미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 의미의 기금형이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 도입 가능성은 중퇴기금과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연금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금형 특성을 갖는 제도들의 성과와 평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금형 도입이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중퇴기금제도 도입은 근로복지공단의 시장지배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중퇴기금 운영이 가능해졌는데, 앞의 <표 II-6>에 의하면 전체 대상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이 94.2%(근로자 기준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시장 범위는 확대되었다. 또한 중퇴기금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집합투자운용(CDC)이 가능하며,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시장지배력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0년 DC형으로 운영되는 3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140만 명)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사업자로 선정한 가입자는 41만 명으로 전체의 29% 수준이다. 이는 중퇴기금제도 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시장 확대가능성은 증가하였으나 현실적 확장성은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중퇴기금 지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공단의 지배력은 지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운영 특성상 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자산관리업무 등 운용은 여전히 금융회사에 위탁할 것이고 또한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 등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과 함께 근로복지공단과 금융업권의 상생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도입 의무화는 대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만, 동 제도의 특성상 기금형 준하여 운영되거나 기본적으로 계약형 체계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대체될 수는 있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사업자와 계열사 간 내부시장이 구축되어 있어 동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자 변경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적극적 투자성향을 보일 적립금운용위원회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조할 사업자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퇴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와 별도로 보편적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사업자 시장 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영국 등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DC형의 경우에는 기금이 금융상품을 선별하는 기능을 가질 뿐 가입자는 현행과 같이 개별운용지시(IDC)를 내려야 하므로 계약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집합투자운용(CDC)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적배당형 투자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펀드수수료 등의 발생으로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 체계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DB형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여는 운용수익률과 무관하므로 기금형 제도로 변경하는 데 근로자가 합의할 유인이 약하다. 사용자도 자산운용의 위험부담을 모두 감당해야 하고 당장의 위원회 운영 등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기금형 도입에 신중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여건, 적극적 투자로의 인식전환, 그리고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탐색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방향 및 시사점

이러한 기금형 도입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퇴직연금이 발전하기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는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퇴직연금 지배구조가 계약형만 허용되던 구조에서 기금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무엇보다 수급권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기금형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제고 노력은 투자리스크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DB형도 임금상승률에 미달하는 투자수익률이 장기화될 경우 퇴직금 제도처럼 최소적립비율을 충당할 수 없어 수급권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해 미국의 PBGC, 영국의 PPF 등에 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DC형의 예금자보호 수준이 5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데 생애자산에 대한 보호라는 점에서 예금보상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업자의 범위를 온라인뱅크,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퇴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으로 기금형 성격이 강화된 상황으로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다양한 지배구조의 등장은 현행 계약형과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을 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금형 도입 시 호주의 사례처럼 퇴직연금 기금 간 경쟁이 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호주의 소매형기금처럼 영리법인(금융업권) 사업자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덕적 해이 등 대리인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미의 기금형 지배구조에서는 수탁자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경향이 있다. 즉, 기금형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서 규정하는 수탁자책임 수준에 준하는 충실의무, 주의의무, 자산관리의무, 정보관리 의무로 체계화하고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약형 구조에서는 대부분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약하였지만 기금형 도입 시 이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RISA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보증보험⁸⁴⁾과 수탁자책임보험⁸⁵⁾ 도입을 검토하여 지배구조 개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금형 도입 등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은 적극적 투자전략을 모색하고 연금자산운용 자회사 설립 및 경쟁사와 상생 연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고금리 상황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던 관행이 저금리 상황에서도 바뀌지 못하였고, 이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기금형 도입과 같은 지배구조 변화는 실적배당형 비중을 늘리는 투자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투자 전략과 자산운용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 및 경쟁사와 상생 연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투자성향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등 산업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쟁사 운용상품의 상품라인업에 포함하고, 필요에

84) 수탁자의 불성실한 행위로부터 연기금과 연금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청구내용이나 보상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85) 수탁자의 과실, 태만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 구입을 통해 연기금과 연금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 여부는 자율에 맡김

따라서는 자산운용을 위탁 등 산업간 상생 연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회사들이 관리부분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용관리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의 우수 운용사(글로벌화)와 협력 체계를 통해 투자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표 IV-1〉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구분	주요내용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 다양한 사업자의 진출 허용(온라인뱅크, 자산운용사 허용 등) • 종퇴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기존 계약형과 경쟁 체계 구축 • 기금형 도입 시 금융업권 사업자도 기금(수탁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선택을 통한 기금 간 경쟁력 제고(호주, 영국 등)
수급권보호 강화	• 지배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수급권보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도 보완 - 언변들형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DB형(퇴직금제 포함) 사업장의 도산에 대비한 지급보장 강화 필요 (예, PBGC, PPF 등과 같은 기구 도입 검토, 예금보상한도 상향 검토)
수탁자 책임/권한 명확	•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영·미와 같이 수탁자책임을 충실의무, 주의의무, 자산관리의무, 정보관리 의무로 체계화하고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수탁자보증보험과 수탁자책임보험 도입을 검토하여 지배구조 개편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6),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확대 및 권리강화”
- _____ (2022),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시행”
- _____ (2022. 4. 2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규제영향분석서”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1), “2021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_____ (2022), “2022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근로복지공단(2015),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
- _____ (2019), 『2019 해외 퇴직연금제도 조사보고서』
- 기재부·고용부·금융위(2014),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김병덕(2017),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KIF 연구보고서, 2017권 8호, 금융연구원
- _____ (2019),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IF VIP 리포트』, 금융연구원
- 김지희(2013), “기금형 지배구조의 특징과 도입에 따른 선결과제,” 퇴직연금뉴스
- 남재우(2018),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 _____ (2020), 「최근 국내 OCIO 시장 확대에 관한 소고」,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 류건식(2013), 「퇴직연금의 건전성 규제와 수급권보호」, 『월간 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6),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험연구원
- 류건식·강성호·이상우(201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보험연구원
- 류건식·김대환·이상우(2013),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 박희진(2019), 「퇴직연금 감독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30권

제4호, pp. 127~162

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2019),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고용노동부

손성동·이봉주·성주호(2017),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향: 정부안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연구』, 제28권 제4호, pp. 129~156

송홍선(2019a),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자산운용체계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_____(2019b),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연구”, 한-호주 퇴직연금포럼, 금융투자협회·호주대사관·고용노동부

_____(2022),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역할 강화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위경우·권순원·설원식·이재현(2008), 「퇴직연금 활성화 과제 법제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고용노동부

이경희(2018),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이봉주·류건식·손성동(2018),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윤리경영에 대한 고찰」, 『리스크 관리연구』, 제29권 제4호, pp. 33~77

이상우·오병국(2012), 『일본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이상우(2018),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이소라(2020),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 개선 해외사례와 시사점」, 『퇴직연금 브리프』, 근로복지연구원

이태호·이중기·권순원·김병덕(2015), 「퇴직연금 기금형제도 도입방안」, 한국채권연구원·고용노동부

정창률(2018), 「퇴직연금 적용방식 개선 방안 연구: 노후소득보장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정책』, 2018-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황원경(2015),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도입효과」, 『KB 지식 비타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통계청/KOSIS/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OECD)

고용노동부(www.moel.go.kr/index.do)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comwel/main.jsp)

과학기술인공제회(www.sema.or.kr/sema/main/main.do)

APRA,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_____(2021),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1 superannuation entities”(<https://www.apra.gov.au/annual-superannuation-bulletin>)

_____(2022), “Quarterly superannuation performance statistics - September 2004 to March 2022”(<https://www.apra.gov.au/quarterly-superannuation-statistics>)

ASFA(2021), “Developments in the number and cost of multiple superannuation accounts”(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ad=rja&uact=8&ved=2ahUKEwj9s5enpYz7AhWJOnAKHYQHC4AQFnoECAkQAQ&url=https%3A%2F%2Fwww.superannuation.asn.au%2FArticleDocuments%2F359%2F2107_Multiple_balances_Paper.pdf.aspx%3FEmbed%3DY&usg=AOvVaw0sB-2yz4IjBooy74eKGw0I)

ATO, “SMSF overview data tables 2019-20”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Super-statistics/SMSF/Self-managed-super-funds--A-statistical-overview-2019-20/>)

_____(2012), “Self-managed super fund statistical report - June 2012,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super-statistics/smsf/self-managed-super-fund-statistical-report---june-2012/>)

_____(2018), “Self-managed super fund quarterly statistical report - June 2018”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super-statistics/smsf/self-managed-super-fund-quarterly-statistical-report---june-201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22), “Labour Force, Australia”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employment-and-unemployment/labour-force-australia/dec-2020>)

- Australian Government, “SMSF quarterly statistical report December 2021”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Super-statistics/SMSF/Self-managed-super-fund-quarterly-statistical-report---December-2021/>)
- Cooke Financial Group, “Do I need a financial advisor for my 401k?”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21), *Pension charges survey 2020*
- Department of Labor(2020),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Historical Tables and Graphs”
_____(2021),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Abstract of 2019 Form 5,500 Annual Reports”,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BSA/researchers/statistics/retirement-bulletins/private-pension-plan-bulletins-abstract-2019.pdf>)
- Liston Newton Advisory(2019), “What is an industry superannuation fund?”
(<https://www.listonnewton.com.au/information-centre/what-is-an-industry-superannuation-fund>)
- OECD(2009a), “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
_____(2009b), “OECD Recommendation on Core Principles of Occupational Pension Regulation”
_____(2010), “OECD Principles of Occupational Pension Regulation [electronic resource]: Methodology for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_____(2015), “Can pension funds and life insurance companies keep their promise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Financial Survey of Pension Scheme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0), “Pension Wealth in Great Britain 2016-2018”
- Penny Pryor(2021), “What you need to know about six member SMSFs”, Super Guide(<https://www.superguide.com.au/smsfs/six-member-smsfs>)
- Stewart and Yermo(2008), “Pension fund governance: Challenges and potential solutions”,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18

Stewart, F. & Yermo, J.(2008), “Pension Fund Governance: Challenges and Potential Solutions”,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18, OECD publishing

The Pension Regulator(2019), “Master trust market post authorisation: final facts and figures”

_____ (각 연도), “DC Trust scheme return data each year”

企業年金連合会(2021), “企業年金実態調査結果”

_____ (2010), “企業年金に関する基礎資料”

_____ (각 연도), “企業年金に関する基礎資料”

厚生労働省(2012), “厚生年金基金の運用体制等に関する調査結果 概要版”

_____ (2015), “厚生年金基金の解散等について”

_____ (2021), “厚生労働白書 2021”

りそな年金研究所(2021. 7), “企業年金・iDeCo等の概況について”

人事院(2021), 「2020년 民間企業の勤務条件制度等調査」

www.irs.gov(미국 국세청)

www.dol.gov(미국 노동부)

www.moneyandpensionsservice.org.uk(영국 MaPS)

www.pfa.or.jp(일본 기업연금연합회)

www.apra.gov(호주 APRA)

FCA website(<https://www.fca.org.uk/firms/independent-governance-committees>)

The Pension Regulator website(<https://www.thepensionsregulator.gov.uk/en/master-trust-pension-schemes/list-of-authorised-master-trusts>)

1. 퇴직저축계좌(Retirement Saving Account: RSA)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제도는 기금형 퇴직연금 계좌 및 퇴직저축계좌를 포함하며, 가입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계좌 외에도 퇴직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연금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⁸⁶⁾ 퇴직저축계좌는 1997년⁸⁷⁾ 비용 절감을 주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은행, 주택금융조합, 상호신용조합, 생명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한다. 퇴직저축계좌를 제공하는 대부분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비, 계좌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저축계좌는 원리금보장형 계좌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퇴직저축계좌는 세제혜택, 사용자 부담금, 자금인출 제한 등에 대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퇴직저축계좌는 9개⁸⁸⁾ 금융회사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이경희 2018).

2. 수탁법인 설립 주체(사업자)별 운영 현황(자기관리기금 등 제외)

호주의 퇴직연금 수탁법인은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회사, 사용자 주도, 공공부문, 연합형, 상장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사용자가 반드시 수탁법인의 설립 주체가 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형 기금은 근로자 혹은 사용자 단체가

86) Australian Taxation Office, "Choosing a super fund: How to complete your Standard choice form (NAT 13080)"

87) Australian Government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Retirement Savings Accounts Act 1997"

88) APRA에 따르면 현재 RSA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Qudos Mutual Ltd, Queensland Country Credit Union, Police and Nurses Limited, Police Financial Services Limited, Defence Bank Limited, Heritage Bank Limited, Australian Military Bank Ltd, IMB Ltd가 있지만, 이들 가운데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Police Financial Services Limited는 신규 RSA 판매를 중단하였음(APRA, 'List of institutions offering Retirement Savings Accounts')

수탁법인을 설립하며, 해당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가입한다.

2019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퇴직연금 기금은 소매형기금(35.1%)이었으며, 다음으로 연합형 기금(2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I-1〉 호주 수탁법인 설립 주체(사업자)별 퇴직연금 운영 현황

(단위: 십억 AUD,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융회사	금액	555	566	612	648	675
	개수	59	57	55	51	47
	비중	44.9	43.8	37.9	36.6	35.1
사용자 주도	금액	73	75	83	83	89
	개수	28	22	20	19	17
	비중	5.9	5.8	5.1	4.7	4.6
공공부문	금액	108	116	302	324	346
	개수	6	6	6	5	5
	비중	8.7	9.0	18.7	18.3	18.0
연합형	금액	327	353	419	493	565
	개수	28	27	27	25	25
	비중	26.5	27.4	25.9	27.8	29.4
상장회사	금액	58	63	70	80	91
	개수	2	2	2	2	2
	비중	4.7	4.9	4.3	4.5	4.8
기타	금액	115	118	130	144	157
	개수	32	30	28	27	18
	비중	9.3	9.1	8.0	8.1	8.2
합계	금액	1,235	1,290	1,615	1,772	1,923
	개수	155	144	138	129	11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자기관리기금 등은 미포함함

자료: APRA,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statistics June 2004 to June 2019"

부록 II

영국 통합기금(Master Trusts)

〈부록 표 II-1〉 영국 통합기금(Master Trusts)

Aegon Master Trust	HSBC Master Trust	Scottish Widows Master Trust
The Aon MasterTrust	Industry-Wide Defined Contribution Section (Railways Pension Scheme)	The SEI Master Trust
Atlas Master Trust	The ITB Pension Funds	Smart Pension Master Trust
Aviva Master Trust	Legal & General WorkSave Mastertrust	Standard Life DC Master Trust
The Baptist Pension Scheme	Legal & General WorkSave Mastertrust (RAS)	Stanplan A
BCF Pension Trust	The Lewis Workplace Pension Trust	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
The Cheviot Pension	LifeSight	The University of Oxford Staff Pension Scheme
Combined Nuclear Pension Plan	Mercer Master Trust	Workers Pension Trust
Creative Pension Trust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NEST)	-
Cushon Master Trust (trading as The Salvus Master Trust)	National Pension Trust	-
The Crystal Trust	NOW: Pensions Trust	-
Ensign Retirement Plan	Options Workplace Pension Trust	-
FCA Pension Plan	The Pensions Trust (TPT Retirement Solutions)	-
Fidelity Master Trust	The People's Pension	-

자료: The Pension Regulator web site(<https://www.thepensionsregulator.gov.uk/en/master-trust-pension-schemes/list-of-authorised-master-trusts>)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저자약력

강 성 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 선임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정 원 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이 상 우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일본 중앙대 상학 석사 / 수석연구원
E-mail : swlee@kiri.or.kr

이 소 양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lishaoyang@kiri.or.kr

연구보고서 2022- 16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발 행 일 2022년 10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고려씨앤피

ISBN 979-11-89741-87-7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